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7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희용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502호)

2024.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임재금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1
III. 주요내용	2
IV. 전부개정법률안의 취지 및 구성	5
1. 전부개정법률안의 취지	5
2. 개정안의 구성 및 주요 내용	8
3. 총괄적 검토	19
4. 개정안에 대한 관계 부처 의견	38
1) 환경부 의견	38
2) 국가유산청 의견	39
V. 조문별 검토	40
1. 법률 제명의 변경 및 목적	40

2. 정의 규정	42
3. 책무, 적용범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47
4. 산림환경보호기본계획의 수립 등	50
5. 산림생태계의 연결성 조사 및 산림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	57
6. 산림보호구역 토지의 매수·교환, 수원함양보호구역 매각·교환 ..	62
7. 주민지원사업	71
8. 특별산림보호종 지정 및 관리	77
9. 산림생태탐방의 육성 및 생태숲의 지정 등	83
10. 보호수 현황조사 등	88
11.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97
12. 기타효과적인지역기반보전조치 실행 지역의 지정 등	100
13. 연구·기술개발 및 산림환경모니터링센터의 지정 등	107
14. 국제협력	115
15. 청문	117
16. 부칙	119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정희용의원 등 14인

나. 발 의 일 : 2024. 9. 2.

다. 회 부 일 : 2024. 9. 3.

II. 제안이유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는 2019년에 발표한 ‘지구평가보고서’를 통하여 기후변화 등 직접요인과 더불어 과도한 생산, 기술발전 등의 간접요인에 의하여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의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우려하였음.

생물다양성협약은 지구평가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2030년까지의 세부실천목표, 2050년까지의 전 지구적 생물다양성 목표를 담은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함(2022년 12월).

한편, 산림은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로서 산림환경의 체계적인 보호는 생물다양성을 포함한 생태계 보전·증진 목표 달성을 위해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으나, 현행법은 산림재해 및 산림보호 분야를 주로 다루고 있어 산림환경이 갖고 있는 생물다양성 및 생태

계 관련 기능과 보전에 대한 조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조항을 보완함에 따라 법령의 적용범위가 변경되어 제명을 「산림환경보호법」으로 변경하고, 기타효과적인지역기반보전조치 등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 등의 발굴을 통해 국제사회 권고 이행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산림보호법」에서 「산림환경보호법」으로 변경함.

나. 이 법은 산림의 다양한 생태계, 산림경관 등을 비롯한 산림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산림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다. 체계적인 산림환경보호 및 산림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산림환경보호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산림생태계, 산림생물다양성 등의 보전목표를 수립하고, 산림환경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산림환

경정보시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12조).

마.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지정해제 및 관리계획의 수립, 관리효과성 평가, 산림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사항,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근거 및 산림생태탐방 육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바. 특별산림보호종의 지정·지정 주기, 보전대책 수립 및 금지행위 등을 규정함(안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사. 보호수의 지정·지정해제, 관리, 행위제한 사항, 심의위원회 운영 근거 및 현황조사에 대하여 규정함(제30조부터 제36조까지).

아.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한 계획수립, 기타효과적인지역기반 보전조치의 실행 지역의 지정 및 모니터링, 현지외보전원의 조성·지정, 산림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7조부터 제43조까지).

자. 산림오염 방지를 위한 금지행위 및 산림환경 보호를 위한 산림보호원의 고용, 민간 활동의 지원, 산림환경보호에 관한 교육·훈련·조사 및 위탁업무 수행을 위한 협회 설립 등에 대하여 규정함(제44조부터 제49조까지).

차. 산림환경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관련 연구·기술개발의 촉진 및 국제협력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0조 및 제52조).

카. 수목진단 및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나무의사등의 자격취득, 나무병원의 등록, 한국나무의사협회, 처방전의 발급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53조부터 제64조까지).

타. 산림보호구역에 불을 지른 자에 대한 처벌 등 이 법 위반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2조부터 제75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희용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안」(의안번호 제22002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V. 전부개정법률안의 취지 및 구성

1.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의 취지

현행 「산림보호법」(법률 제9763호, 2009. 6. 9. 제정, 2010. 3. 10. 시행)은 자연적·인위적 산림피해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통합적 법적 기반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제정되었음.¹⁾

이러한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63%가 산림인 우리나라의 2020년 기준 1인당 산림면적은 0.1ha로 OECD 주요국 평균 0.9ha에 훨씬 못 미치고 있고, 캐나다 9.2ha, 핀란드 4ha, 스웨덴 2.8ha, 미국 1.2ha, 일본 0.2ha 등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음.²⁾

더욱이 최근 전 세계가 기후위기의 상황에 직면하여 산림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국제사회는 인류의 생존기반으로 산림의 보전 및 훼손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불법적인 산림의 훼손을 방지하고 산불 및 산사태 등 산림재난으로부터 산림의 보존 및 복원 등을 통해 1인당 산림면적을 확보·증대하면서 국제사회의 이슈인 산림생태계의 유지와 보호 등에 관하여 폭넓게 다룰 수 있는 법적 기반이 필요해 보임.

1) 「산림보호법안 심사보고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9.4. pp.7~8.

“이 법안은 (중략) 산림보호정책과 관련된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정리하고, 추가로 필요한 규정들을 신설함으로써 산림보호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2) 「산림통계자료」, 산림청, 2023.2.

그러나 현행 「산림보호법」에는 i) 산림보호 및 보호구역 지정·관리, 보호수 지정·관리, 입산통제구역³⁾ 등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ii) 수목진료 및 나무의사 등 수목 치료 제도에 관한 사항,⁴⁾ iii) 산불·산사태 및 산림병해충의 예방 및 대응 산림재난에 관한 사항 등 여러 분야가 혼재되어 있어 점차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산림환경 분야의 특성 및 정책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기에는 상당한 한계에 봉착해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환경 분야의 경우,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의 예방 및 환경의 지속가능한 관리·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을 토대로 대기환경·토양환경·해양환경·자연환경·도시 및 주거환경·환경오염시설 등 정책 분야별로 개별법이 제정되어 환경관리 정책의 체계화를 도모하는 반면, 산림 분야의 경우 지속가능한 관리·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는 개별법이 부재한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이슈에 방점을 두고 산림보호를 포괄하는 보다 광범위한 개념인 산림환경보호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현행 「산림보호법」에서 산불·산사태 및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기타효과적인지역기반보전조치’, ‘산림생물다양성’ 및 ‘산림생태계’의 기능과 보전 등에 관한 내용을 새롭게 추가하여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로서 산림환경의 체계적 보전 및 보호를

3) 「산림보호법」 제7조부터 제19조까지 산림보호구역 및 입산통제구역 관련 규정

4) 「산림보호법」 제21조의3부터 제21조의14까지 수목치료 및 나무의사 관련 규정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그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산림청도 개정입법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음.

2. 개정안의 구성 및 주요 내용

개정안은 법률의 제명을 “산림보호법”에서 “산림환경보호법”으로 변경하고, 조문 구조 등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여 기존 7장 57개조의 조문을 8장 75개조로 정리하면서,

안 제2조(정의)에서 “산림환경”, “산림생태계”, “산림생물다양성”, “산림생물자원”, “현지의보전원”, “기타효과적인지역기반보전조치” 등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 제8조(산림환경보호기본계획의 수립)부터 제12조(산림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까지, 제21조(주민지원사업), 제24조(산림생태탐방의 육성 등), 제25조(특별산림보호종의 지정), 제26조(특별산림보호종 보전대책 수립 등), 제36조(보호수 현황조사 등), 제37조(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부터 제40조(기타보전조치지역의 산림생물다양성 증진 및 모니터링)까지, 제42조(현지의보전원의 조성·지정 등), 제43조(산림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등), 제47조(산림환경보호활동의 지원), 제48조(산림환경보호협회의 설립 등), 제50조(연구·기술개발 등)부터 제52조(국제협력)까지, 제65조(관계 기관의 협조) 등을 신설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산불, 산불방지, 산불유관기관, 산사태, 산사태예방, 산사태유관기관, 산사태취약지역, 산사태정보체계” 등 용어를 비롯하여 “산불·산사태 예방,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산불방지장기대책 수립, 산사태예방장기대책의 수립·시행,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 산

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분리하여 정희용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안」(의안 번호 제2200211호)으로 이관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있음.

이에 더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산림생물다양성에 관한 사항을 분리·이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현재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현지의보존원’ 등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제한된 관리기 본계획수립 및 효과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산림보호구역으로 확대 하고, 산림생물다양성 및 산림생태계 등의 기능과 보전에 관한 사항 등을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개정안」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제명	■ 산림환경보호법
구성	■ 산림환경보호 계획 수립 → 산림보호구역 등 → 산림생물자원 보호 → 산림생물다양성의 현지 내 및 현지 외 보전 → 산림환경보호 활동 및 지원
정의 (제2조)	■ 산림환경, 산림생태계, 산림생물다양성, 산림생물자원, 특별산림 보호종, 보호수, 현지의보존원, 기타효과적인지역기반보전조치 등에 대한 정의 신설

구분	주요 내용
산림환경 보호계획 수립 등 (제8조 및 제9조)	■ 산림환경보호기본계획: 산림청장이 수립(5년) ■ 산림환경보호지역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5년)
산림생태계 조사 등(제10조 및 제11조)	■ 산림의 건강·활력도 조사: 산림청장은 산림생태계가 건강하고 다양하게 유지되고 있는 정도를 조사·평가할 수 있음 ■ 산림생태계의 연결성 조사: 산림청장은 산림 내 물질순환 및 생물이동이 자연스러운 상태, 단절·훼손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산림생태계 연결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제12조)	■ 산림청장은 산림생태계, 산림생물다양성, 산림생물자원 등의 정보가 포함된 산림환경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보호구역 지정·지정해제 등 관리 (제13·14·16·17·18 조)	■ 산림보호구역 지정·지정해제·관리권자: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 특별시의 장 ■ 산림보호구역 지정유형: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 산림생물다양성보호구역* * 명칭변경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 산림생물다양성보호구역
보호구역 관리계획 수립·시행 (제15조)	■ 산림보호구역 관리계획: 산림청장이 수립(5년) ■ 산림보호구역 지역관리계획: 시·도지사, 특별시의 장, 지방산림청장이 수립(5년) ■ 산림보호구역 시행계획: 산림청장, 시·도지사, 특별시의 장, 지방산림청장이 수립(매년)
주민지원 사업(제21조)	■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보호구역 거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보호구역 관리효과성평가 (제22조)	■ 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의 보전 및 관리의 효과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며, 결과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국립공원 안의 산림보호구역 관리 등 (제23조)	■ 지방산림청장은 국립공원 내 산림보호구역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법으로 정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며, 공원관리청에 미리 통보하여야 함 ■ 국립공원 안의 산림보호구역을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공원관리청이 개설·운영하는 탐방로 등은 협의하여 그 출입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음

구분	주요 내용
산림생태 탐방 육성 (제24조)	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에서 산림생태탐방 및 교육을 추진할 수 있으며, 산림생태탐방의 육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지역주민 또는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음
특별산림 보호종의 지정 및 보전대책 수립 (제25조 및 제26조)	- 산림청장은 5년마다 특별산림보호종을 다시 지정해야 함 - 산림청장은 특별산림보호종 보전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함
보호수 행위제한 (제32조)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하는 행위 금지.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허용
보호수 심의위원회 (제34조)	보호수 지정해제에 관한 보호수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인해 소실(燒失)된 경우’를 제외
보호수 현황조사 등 (제36조)	- 산림청장은 보호수가 현재 있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관리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필요시 보호수가 점유하는 토지를 매수하거나 다른 토지와 교환함으로써 보호수를 보호·관리할 수 있음 -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안전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 보호수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보호수의 병해충 피해 등 예방 및 치료행위, 보호수 주변 지역 환경정비 및 재해예방, 보호수 및 주변지역 재해 응급조치 등
산림생물 다양성의 보전 등 (제37조)	- 산림청장은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등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생태숲, 수목원·정원의 조성, 조사·관리사업을 할 수 있음
기타효과적인지역 기반보전조치 실행 지역 지정 등 (제38조)	- 산림청장은 기타효과적인지역기반보전조치가 실행되는 지역(이하, 기타보전조치지역)을 지정할 수 있음 - 「산지관리법」에 따른 공익용산지 중 자연휴양림, 사찰림, 그 밖에 산림생물다양성의 현지 내 보전에 기여하는 지역 등을 지정

구분	주요 내용
기타보전 조치지역 관리계획 수립·시행 등 (제39조)	■ 산림청장은 기타보전조치지역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관리계획은 기타보전조치지역의 보전·관리 목표의 설정, 보전·복원·관리에 필요한 사항, 조사·연구·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
기타보전조치지역 의 산림생물 다양성 증진 및 모니터링 (제40조)	■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타보전조치지역 내에서 산림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보호·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타보전조치지역의 산림생물다양성 현지 내 보전효과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 하여야 함
현지외보전원의 구성·지정 등 (제42조)	■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산림생물다양성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현지외보전원을 조성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산림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등 (제43조)	■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산림생물자원이용시설*을 설치·운영·지정할 수 있음 * 산림생물자원을 보전·관리하거나 훼손 방지 시설, 특별산림보호종, 보호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 가치가 높은 산림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설, 산림생물자원의 수집, 증식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기술 개발·보급을 위한 시설, 산림생물자원의 보전 및 복원을 위한 시설 등
산림환경 보호활동의 지원 (제47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환경의 보호를 위한 민간단체의 활동 지원 가능
산림환경 보호협회의 설립 등 (제48조)	■ 산림환경의 보호에 관한 교육·훈련, 조사 및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산림환경보호협회를 설치함
명예산림 보호감시원 위촉 등 (제49조)	■ 산림청장 등은 산림환경보호활동을 증진하는 업무를 할 명예산림보호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감시원은 산불방지·산림훼손 방지·산림 정화·산림보호를 위한 지도와 계몽활동을 수행
연구·기술개발 등 (제50조)	■ 산림청장은 산림환경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 관련 연구 및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구분	주요 내용
산림환경모니터링 센터 지정 등 (제51조)	산림청장은 산림환경보호 및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증진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림환경모니터링센터를 지정할 수 있고, 센터는 기후변화 취약 산림생태계의 변화내용 관찰 등의 사업을 수행함
국제협력 (제52조)	산림청장은 산림환경보호와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관련한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산림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관련 국제기구 활동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함
관계기관의 협조 (제65조)	산림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이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다른 사람의 토지 출입 등 (제71조)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산림보호종의 보전, 보호수의 안전관리사업, 산림보호구역의 관리효과성 평가 및 산림의 건강·활력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인 토지 등에 출입할 수 있음

「산림보호법」 및 개정안의 구성 체계를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음.

【「산림보호법」과 「개정안」의 구성 비교】

현 행	개정안
제 명 : <u>산림보호법</u>	제 명 : <u>산림환경보호법</u>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u>산림보호의 기본원칙</u>)	제3조(<u>산림환경보호의 기본원칙</u>)
<신 설>	제4조(<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u> <u>책무</u>)
제4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산림의 구분과 산림의 관할 행정청)	제7조(산림의 구분과 산림의 관할 행정청)
<신 설>	제2장 <u>산림환경보호기본계획 수립</u> <u>등</u>
<신 설>	제8조(산림환경보호기본계획의 수립)
<신 설>	제9조(산림환경보호지역계획의 수립)
제19조(산림의 건강·활력도)	제10조(산림의 건강·활력도 조사 등)
<신 설>	제11조(산림생태계의 연결성 조사 등)
<신 설>	제12조(<u>산림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u> <u>· 운영 등</u>)
<신 설>	제3장 <u>산림보호구역 등</u>
제7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	제13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
제8조(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제14조(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제10조의3(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	제15조(산림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

현행	개정안
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u>제9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u> <u>제10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등)</u> <u>제11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u> <u>제11조의2(산림보호구역의 재지정)</u> <u>제12조(산림보호구역의 토지의 매수·교환)</u> <u>제12조의2(수원함양보호구역 토지의 매각·교환 등)</u> <u><신설></u> <u>제10조의4(효과성 평가)</u> <u>제10조의2(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 자원보호구역 관리)</u>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제18조의2(특별산림보호대상종의 지정·관리)</u> <u>제18조의3(보호종의 굴취·채취 금지 등)</u> <u>제18조(생태숲의 지정 등)</u> <u><신설></u>	의 수립·시행 등) <u>제16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u> <u>제17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등)</u> <u>제18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u> <u>제19조(산림보호구역의 재지정)</u> <u>제20조(산림보호구역의 토지의 매수·교환)</u> <u><삭제></u> <u>제21조(주민지원사업)</u> <u>제22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효과성 평가)</u> <u>제23조(국립공원 안의 산림보호구역 관리 등)</u> <u>제24조(산림생태탐방의 육성 등)</u> <u>제4장 산림생물자원 보호</u> <u>제1절 특별산림보호종 보호</u> <u>제25조(특별산림보호종의 지정)</u> <u>제26조(특별산림보호종의 보전대책 수립 등)</u> <u>제27조(특별산림보호종의 관리)</u> <u>제28조(특별산림보호종의 굴취·채취 금지 등)</u> <u>제29조(생태숲의 지정 등)</u> <u>제2절 보호수의 관리 및 지원</u>

현행	개정안
제13조(보호수의 지정·고시)	제30조(보호수의 지정·고시)
제13조의2(보호수의 관리 및 이전 등)	제31조(보호수의 관리 및 이전 등)
제13조의3(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제32조(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제13조의4(보호수의 지정해제)	제33조(보호수의 지정해제)
제13조의5(보호수 심의위원회)	제34조(보호수 심의위원회)
제13조의6(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	제35조(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
<신설>	제36조(보호수 현황조사 등)
<신설>	제5장 산림생물다양성의 현지 내 및 현지 외 보전
<신설>	제37조(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등)
<신설>	제38조(기타효과적인지역기반보전조 치 실행 지역의 지정 등)
<신설>	제39조(기타보전조치지역 관리계획 의 수립·시행 등)
<신설>	제40조(기타보전조치지역의 산림생 물다양성 증진 및 모니터링)
제15조(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등)	제41조(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등)
<신설>	제42조(현지외보전원의 조성·지정 등)
<신설>	제43조(산림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등)
<신설>	제6장 산림환경보호 활동 및 지원
<신설>	제1절 산림환경보호 활동 등
제16조(산림오염 방지 등을 위한 금 지 행위)	제44조(산림오염 방지 등을 위한 금 지 행위)
제14조(산림정화구역의 지정 등)	제45조(산림정화구역의 지정 등)
제17조(산림보호원의 고용)	제46조(산림보호원의 고용)

현행	개정안
<u><신설></u> <u><신설></u> <u>제46조(숲사랑지도원의 위촉 등)</u>	<u>제47조(산림환경보호활동의 지원)</u> <u>제48조(산림환경보호협회의 설립 등)</u> <u>제49조(명예산림보호감시원의 위촉 등)</u> <u>제50조(연구·기술개발 등)</u> <u>제51조(산림환경모니터링센터의 지정 등)</u> <u>제52조(국제협력)</u>
<u><신설></u> <u><신설></u>	<u>제2절 수목진단 및 보호</u>
<u>제21조의3(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u> <u>제21조의4(나무의사 등의 자격 취득)</u> <u>제21조의5(나무의사 등의 결격사유)</u> <u>제21조의6(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등)</u> <u>제21조의7(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u> <u>제21조의8(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u> <u>제21조의9(나무병원의 등록)</u> <u>제21조의10(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등)</u> <u>제21조의11(한국나무의사협회)</u> <u>제21조의12(처방전 발급 등)</u> <u>제21조의13(나무의사의 교육)</u> <u>제21조의14(보고·검사 등)</u>	<u>제53조(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u> <u>제54조(나무의사등의 자격 취득)</u> <u>제55조(나무의사등의 결격사유)</u> <u>제56조(나무의사등의 자격증 발급 등)</u> <u>제57조(나무의사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u> <u>제58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u> <u>제59조(나무병원의 등록)</u> <u>제60조(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등)</u> <u>제61조(한국나무의사협회)</u> <u>제62조(처방전의 발급 등)</u> <u>제63조(나무의사의 교육)</u> <u>제64조(보고·검사 등)</u>
제6장 보칙	제7장 보칙
<u><신설></u> <u>제48조(포상)</u> <u>제48조의2(수수료)</u> <u>제48조의3(청문)</u> <u>제51조(권리·의무 등의 승계)</u>	<u>제65조(관계기관의 협조)</u> <u>제66조(포상)</u> <u>제67조(수수료)</u> <u>제68조(청문)</u> <u>제69조(권리·의무 등의 승계)</u>

현행	개정안
제52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49조(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제70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71조(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제7장 벌칙	제8장 벌칙
제53조(벌칙) 제54조(벌칙) 제54조의2(벌칙) 제55조(몰수와 추징) 제56조(양벌규정) 제57조(과태료)	제72조(벌칙) <삭 제> <삭 제> 제73조(몰수와 추징) 제74조(양벌규정) 제75조(과태료)

3. 총괄적 검토

개정안은 산림환경훼손의 예방, 산림환경의 복원, 산림생물다양성 증대, 산림생태계의 보전 등 산림환경 특성에 적합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의 기본방향 및 원칙을 제시하고 이를 조화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산림환경에 특화된 하나의 법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되고, 산림청도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음.

다만, 개정안을 수용할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물다양성법」”) 등 기존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해 보임.

또한, 개정안이 환경정책의 기본법인 「환경정책기본법」, 생태계 및 자연경관 보전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는 「자연환경보전법」, 국제사회의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⁵⁾(이하 “생물다양성협약”)의 국내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생물다양성법」과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산림생물다양성에 관한 내용을 단순히 분리한 것에 그치지 않고 산림 분야의 특수성을 잘 반영하여 규정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

5)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은 전세계 196개국,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등이 참여하고,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92년에 채택된 협약으로, 2년 주기 당사국 총회 시 협약 이행을 위한 결정문을 통해 국제적 생물다양성 보전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첫째, 개정안은 법률 제명을 「산림환경보호법」으로 변경하면서, “산림환경”에 대한 정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산림자원”의 구성요소를 이용하여 정의하고 있어 산림환경의 특성과 관련성 및 법률 제명과 정합성 측면에서 보완의 필요성이 있음.

참고로 「환경정책기본법」⁶⁾ 등 유사 입법례를 고려할 수 있음.

둘째, 개정안은 현행 「산림보호법」에서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에 관한 내용을 정희용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안」⁷⁾으로 분리·이관하면서 해당 규정들을 삭제하고 있으므로, 개정안 심사 시 「산림재난방지법안」을 연계한 심사가 필요해 보임.

예를 들어, 입산통제구역과 관련해서 안 제41조는 입산통제구역의 지정·해제 주체를 특별자치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으로 명시하고 있는 반면,

「산림재난방지법안」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산림청장 및 국

6)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7) 의안번호 제2200211호, 2024.6.7. 발의

8) 제15조(산불 예방 등) ⑥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림재난 위험도평가에 따라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하 “산불취약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산림보호법」 제15조에 따른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7. “산림재난방지기관”이란 산림재난방지를 계획·실행하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유림관리소의 장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바, 중복 규정으로 인한 입산통제구역의 지정주체 간 저촉되는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정안은 2024년 10월 말 기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과 연계해 심사할 필요가 있음.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 산주 및 사찰림에 대한 보상제도인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의 도입을 규정하는 내용의 서삼석의원 및 주호영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액을 녹색자금의 재원에 포함하고 녹색자금 용도에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금을 포함하는 사항을 담은 주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음.

기관을 말한다.

다. 지역산불관리기관: 산불의 예방·진화를 하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 개정안과 연계 심사가 필요한 법률안 계류현황 】

	의안번호	대표발의	발의일자 (회부일자)	주요내용
1	2203946	정희용	2024.9.11. (2024.9.12.)	o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과 관련된 조항 등을 삭제·정비함
2	2202832	서삼석	2024.8.14. (2024.8.16.)	o 산림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공익규제를 받는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 산주에 대한 보상제도인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를 도입함 o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 시행을 위한 정보화 시책을 수립·시행함. o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 명예감시원을 운영함
3	2204563	주호영	2024.10.4. (2024.10.7.)	o 산림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공익규제를 받는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 산주 및 사찰림에 대한 보상제도인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를 도입함 o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재원으로 하고, 「산림자원법」에 따른 녹색자금으로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4	2204564	주호영	2024.10.4. (2024.10.7.)	o 녹색자금의 재원에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액을 포함하고, 녹색자금 사업의 범위에 산림 공익가치보전 지불제도 시행에 관한 사업을 추가함
5	2204565	주호영	2024.10.4. (2024.10.7.)	o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액의 일부를 「산림자원법」에 따른 녹색자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셋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산림복원”에 관한 규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개정안은 산림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부터 ‘산림생물다양성 유지·증진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제42조(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를 분리·이관하되, 산림생물다양성 보전과 연계되는 산림복원⁹⁾에 관한 다음과 같은 조문들은 해당 법률에 그대로 두고 있어, 법체계상 정합성이 부족해 보임.¹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지속가능한 산림의 이용 및 보전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의 산림복원에 관한 규정으로는 제2조(정의), 제42조의2(산림복원의 기본원칙), 제42조의3(산림복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2조의4(산림복원 기본계획 등의 심의), 제42조의5(산림복원 대상지의 실태조사), 제42조의6(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 제42조의7(산림복원사업의 계획·시행 등), 제42조의8(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제42조의9(산림복원의 재료 등), 제42조의10(산림복원 전문 인력의 양성), 제42조의11(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 등) 등이 있음.

그런데 개정안은 부칙 중 “다른 법률의 개정”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를 단순 삭제하여, 해당 조항의 삭제로 인하여 잔존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산림복원”이란 자연적·인위적으로 훼손된 산림의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이 원래의 상태에 가깝게 유지·증진될 수 있도록 그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10) 환경분야의 기본법인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보전을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로 정의하고 있음.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위의 조문간 서로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대로 산림생물다양성 보전과 연계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산림복원에 관한 관련 규정들을 포함하지 않게 된다면, 산림생태계 및 산림생물다양성 등의 보전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법률로써 통합하여 체계화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산림환경 분야의 관련 내용 등 개정안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분산되어 규정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넷째, 제안이유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개정안의 주요 입법 취지는 산림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이에 맞추어 법률의 제명도 「산림환경보호법」으로 변경하려는 것이나, 산림생물다양성 보전과 관련하여 「생물다양성법」에서 규정하는 사항들과 연계하여 산림 분야에 맞게 체계화 및 종합화를 충분히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구체적으로 개정안의 산림생물다양성에 관한 내용은 기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보호법」의 해당 조문을 정리한 것으로서, 산림생물다양성 증대에 필요한 사항, 보호가치가 높은 산림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 및 승인취소에 관한 사항, 산림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산림생태계 보호를 위한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의 관리 등 「생물다양성법」상 관련 내용을 충분히 포함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¹¹⁾

따라서 산림 분야의 특성에 맞춰 「생물다양성법」의 목적 및 원칙에 부합하도록 산림생물다양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다섯째, 타법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도록 보완이 필요해 보임.

먼저, 현행 「산림보호법」¹²⁾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일부개정에 따라 종전의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제1호¹³⁾마목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보호구역(국가지정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보호

11) 「생물다양성법」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제7조) 시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의 관리,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의 대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이와 연계하여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및 승인취소, 위해성평가,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반입 승인, 유입주의 생물의 관리,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출 등 금지 등을 규정함.

12) 법률 제19251호, 2023.3.21., 타법개정, 2024.3.22. 시행

13) 제11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

마.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른 보호구역(국가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보호구역(천연기념물·명승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의 지정 및 관리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아. 「문화재보호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시·도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시·도자연유산 보호구역(시·도자연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의 지정 및 관리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역(국가지정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보호구역(천연기념물·명승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으로,

같은 호 아목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시·도지정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4조제2항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시·도지정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시·도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 보호구역(시·도자연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으로 각각 개정
한 바 있으나, 안 제18조제1항제1호마목 및 아목은 이를 반영하지 않아 수정이 필요함.

다음으로, 안 제59조(나무병원의 등록), 제61조(한국나무의사협회), 제63조(나무의사의 교육), 제72조(벌칙) 및 제75조(과태료)는 우리 위원회가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¹⁴⁾에 대해 수정의결(2024.9.25, 제418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이 필요해 보이는바,

동 수정안 중 ‘나무의사의 교육’, ‘수목진료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나무의사 등의 경력증명서 발급 등’ 3개의 개정사항은 새로운 조를

14) 여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88)에 대한 위원회 수정안 참고

각각 신설하여 추가할 필요가 있음.

이 경우 신설하는 조의 위치는 ‘나무의사의 교육’은 안 제62조 다음에, ‘수목진료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나무의사 등의 경력증명서 발급 등’은 안 제64조 다음에 각각 순차적으로 추가하고, 해당 조 번호 및 인용조항 번호 등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여섯째, 개정안 전반에 걸쳐 조문별로 행정주체를 각각 달리하고 있어 법 시행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일관성 및 체계성 측면에서 정비가 필요해 보임.

예를 들면, 안 제9조는 산림환경보호지역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의 의무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안 제15조는 지역관리계획의 수립·시행의 의무주체를 시·도지사, 특별시장 및 지방산림청장으로, 안 제39조는 기타보전조치지역 지역관리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의 의무주체를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음.

또한, 안 제42조는 현지의외보전원의 조성·지정주체를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 안 제45조는 산지정화구역의 지정주체를 산림청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으로, 안 제46조 및 제49조는 산림보호원 고용 주체 및 명예산림보호감시원의 위촉권자를 각각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산림청은 안 제45조의 경우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이므로, 지정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이는 산림보호원 고용 및 명예산림보호감시원 위촉에 관한 행정주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되고 있어 일관성이 결여된 측면이 있음.

따라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항에 대하여 개개 조문별로 행정주체를 달리 규정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개정안 전반에 걸쳐 검토가 필요한바, 다음 표에서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주체의 수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조문별 행정주체 】

조번호	주요 내용	행정주체
제8조	산림환경보호기본계획의 수립	산림청장
제9조	산림환경보호지역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마련 - 시·도 지역계획, 시·군·구 지역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장 - 지방산림청장을 보완할 필요
제10조	산림의 건강·활력도 조사 및 보전 대책 수립·시행	산림청장
제11조	산림생태계의 연결성 조사 등	산림청장
제12조	산림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산림청장
제13조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산림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조번호	주요 내용	행정주체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및 특례시의 장
제14조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의 고시 등	산림청장, 시·도지사
제15조	산림보호구역 관리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산림청장
	지역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시·도지사, 특례시의 장, 지방산림청장
제16조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허가) 산림청장, 시·도지사 및 특례시의 장
제17조	산림보호구역의 관리	산림청장, 시·도지사 및 특례시의 장
제18조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산림청장, 시·도지사 및 특례시의 장
제19조	산림보호구역의 재지정	산림청장, 시·도지사 및 특례시의 장
제20조	산림보호구역의 토지의 매수·교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21조	주민지원사업 시행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22조	산림보호구역의 관리효과성평가	산림청장
제23조	국립공원 안의 산림보호구역 관리 등을 할 경우 공원관리청에 통보	지방산림청장
제24조	산림생태탐방의 육성·지원	산림청장
제25조	특별산림보호종의 지정	산림청장
제26조	특별산림보호종 보전대책 수립 등	산림청장
제27조	① 보호종 집단서식지 보호구역 등 지정	산림청장,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
	② 산림사업 시 보호종 자생지 피해 최소화방안 수립·시행	
	③ 보호종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산림청장, 시·도지사
제28조	특별산림보호종의 굴취·채취 금지	(허가) 산림청장,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
제29조	생태숲의 지정	(지정, 지원) 산림청장 (지정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산림청장
제30조	보호수의 지정·고시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
제31조	보호수의 관리 및 이전 등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
제32조	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
제33조	보호수의 지정해제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
제34조	보호수 심의위원회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

조번호	주요 내용	행정주체
제35조	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36조	보호수 현황조사 등	(모니터링, 자료제출요청) 산림청장 (토지 매수·교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리)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
제37조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등	(계획수립) 산림청장 (사업수행)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38조	기타효과적인지역기반보전조치 실행 지역의 지정 등	산림청장
제39조	기타보전조치지역 관리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산림청장
	기타보전조치지역 지역관리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
제40조	기타보전조치지역의 산림생물다양성 증진 및 모니터링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41조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등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제주)·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장
제42조	현지의보전원의 조성·지정 등	산림청장, 시·도지사
제43조	산림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등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45조	산림정화구역의 지정 등	산림청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장
제46조	산림보호원의 고용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장
제47조	산림환경보호활동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제48조	산림환경보호협회의 설립 등	(예산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49조	명예산림보호감시원의 위촉 등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장
제50조	연구·기술개발 등	산림청장
제51조	산림환경모니터링센터의 지정 등	산림청장
제52조	국제협력	산림청장
제53조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산림청장,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
제56조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등	산림청장
제57조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	산림청장
제58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산림청장
제59조	나무병원의 등록	(등록) 시·도지사

조번호	주요 내용	행정주체
제60조	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등	(등록취소, 영업정지) 시·도지사
제61조	한국나무의사협회 설립	(인가) 산림청장
제63조	나무의사의 교육	(보수교육기관 지정) 산림청장
제64조	보고·검사 등	(자료요청, 조사·검사) 산림청장, 시·도지사 (나무의사 가입자료 제공) 시·도지사 (나무병원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요청) 산림청장
제65조	관계 기관의 협조	산림청장
제66조	포상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 산림청장
제68조	청문	산림청장, 시·도지사 §56⑥, §57②, §60①
제71조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 음영셀은 행정주체 수정이 필요

일곱째, 체계자구 정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정안은 “산림보호”, “산림환경보호”, “산림환경 보호” 및 “산림환경 보전”을,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지역계획”과 “시·도지역 계획 및 시·군·구 지역계획” 등을 각각 혼용하여 표현하고 있고,

“산림병해충”, “산림병해충 예찰”, “산불예방활동” 및 “산불방지” 등 개정안에서 빈도 높게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약칭의 위치 오류와 띄어쓰기의 필요 등 보완이 필요해 보임.

예를 들면, 개정안의 다수 조문에서는 “산림보호”, “산림환경보

호”, “산림환경 보호” 및 “산림환경보전”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라는 용어를 특별한 사유 없이 혼재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용어의 통일성·일관성과 법문의 명확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일관성 유지 및 혼선 방지를 위해 “산림보호”, “산림환경보호”, “산림환경 보호” 및 “산림환경 보전” → “산림환경보호”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 ‘산림보호’, ‘산림환경보호’, ‘산림환경 보호’, ‘산림환경 보전’ 용어 사용 예시 】

1. 산림보호		
관련 용어	개정안	
1 산 립 보 호 구역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산림보호구역”이란 산림에서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산림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생활환경·경관의 보호와 수원(水源) 함양 및 재해 방지를 위하여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산림환경보호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3. 산림보호구역의 합리적·체계적 관리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할 것	
	제5조(적용범위) 산림이 아닌 토지나 나무에 대하여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기타효과적인지역기반보전조치가 시행되는 지역, 보호수 및 수목진료에 관한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	
	제3장 산림보호구역 등	
	제13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 ~ 제24조(산림생태탐방의 육성 등)	
	제16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1.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는 행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시설의 설치, 산림병해충의 방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기 위	

		하여 부수적으로 하는 제1항 각 호의 행위 제17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등) ②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산림보호구역의 보호·관리나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인을 지정하거나,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산림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산림보호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산림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관리인 또는 산림보호협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그 보호·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으며,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2		제3조(산림환경보호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유기적인 산림보호 협조체계를 만들어서 산림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게 할 것
3		제41조(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특별산림보호종의 서식지 파괴 등 산림생물자원의 급격한 감소가 우려되는 경우,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산림의 일부 지역(「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한다)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
4	산 립 보 호 원	제46조(산림보호원의 고용) ①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 및 산림정화구역의 훼손·오염 방지 등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산림보호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그 밖에 산림보호에 필요한 활동
2. 산림환경보호		
5		제3조(산림환경보호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유기적인 산림보호 협조체계를 만들어서 산림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게 할 것
6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환경보호의 책무를 지며, 지속가능한 산림의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추구하고 산림을 건강하게 보전·관리하여야 한다.

7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산림환경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8		제2장 산림환경보호 계획의 수립 등
9	산 립 환 경 보 호 기 본 계 획	제8조(산림환경보호기본계획의 수립) ① 산림청장은 산림을 건강하게 보호하고 산림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림에 대한 산림환경보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림환경보호에 관한 기본방향 및 보호·관리 목표설정에 관한 사항 2. 산림환경보호를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사업에 관한 사항 7. 산림환경보호를 위한 조사·연구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10	산 립 환 경 보 호 지 역 계 획	제9조(산림환경보호지역계획의 수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림환경보호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11	산 립 환 경 보 호 기 본 계 획	제40조(기타보전조치지역의 산림생물다양성 증진 및 모니터링) ⑤ 제4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는 산림환경보호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2		제6장 산림환경보호 활동 및 지원 제1절 산림환경보호 활동 등
13		제47조(산림환경보호활동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환경의 보호를 위한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4		제48조(산림환경보호협회의 설립 등) ① 산림환경의 보호에 관한 교육·훈련, 조사 및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산림환경보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15		제49조(명예산림보호감시원의 위촉 등) ①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하 이 조에서 “위촉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숲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고 산림환경보호활동을 증진하는 업무를 할 감시원(이하 “명예산림보호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16		제51조(산림환경모니터링센터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환경보호 및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증진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산림환경모니터링센터

		(이하 “모니터링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7		제52조(국제협력) 산림청장은 산림환경보호와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관련한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산림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산업인력·기술의 교류, 관련 국제기구 활동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3. 산림환경 보호		
18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② 모든 국민은 산림환경 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산림환경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9	산 립 정 화 구역의 지정	제45조(산림정화구역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어 오염을 방지·정화할 필요가 있는 산림이나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정화구역에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림오염의 방지·정화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0	산 립 환 경 보호협회	제48조(산림환경보호협회의 설립 등) ① 산림환경의 보호에 관한 교육·훈련, 조사 및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산림환경보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림환경의 보호에 관한 교육·훈련 2. 산림환경에 관한 조사 3. 산림환경 보호와 관련된 기술·정보의 국제교류 4. 산림환경 보호에 관한 행정기관의 위탁업무 5. 그 밖에 산림환경 보호 관련 업무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회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산림환경 보전		
21		제45조(산림정화구역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어 오염을 방지·정화할 필요가 있는 산림이나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정화구역에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림오염의 방지·정화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1		제50조(연구·기술개발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환경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 관련 연구 및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산림환경 보전 및 증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여덟째, 용어 정의와 관련해서는 i) “산림병해충 예찰”, “산불예방 활동”, “곶자왈” 등은 다른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해당 법률을 인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들 용어는 표현의 간결화 및 통일성을 위해 해당 법률의 근거 규정을 인용하는 것이 적절하고,

ii) “현지 내 보전”, “현지 외 보전” 등 개정안에서 전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쉽게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정의가 필요한바, “현지 내 보전” 및 “현지 외 보전” 관련 입법례로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¹⁵⁾ 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iii) 안 제20조에 따른 “곶자왈”¹⁶⁾, “풍혈지”, “산림습원”¹⁷⁾은 전

15)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현지내보존”이란 농업생물자원을 그 자연서식지 내에서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육성종은 그들의 고유한 특성을 발전시킨 환경에서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7. “현지외보존”이란 농업생물자원을 그 자연서식지 외에서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1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4조(곶자왈 보전) ①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제주도 화산활동 중 분출한 용암류가 만들어낸 불규칙한 암괴지대로서 숲과 덩굴 등 다양한 식생을 이루는 곳(이하 “곶자왈”이라 한다)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7) 「습지보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문적 강학상 용어에 해당하나 법률용어로서 그 뜻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용어에 관한 다른 법률상 정의 규정을 인용하거나 직접 규정하는 등 명확히 표현해 줄 필요가 있고,

iv)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약칭하는 “시·도지사”는 안 제13조제1항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이 약칭이 처음 사용되고 있는 안 제8조제6항으로 그 위치를 조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끝으로, 안 부칙 제16조는 “다른 법률의 개정”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의 법률을 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현행 「산림보호법」을 인용하고 있는 법률에는 2개 법률 외에 108개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이를 반영하여 누락된 108개의 법률을 추가하고 조항번호 등 경미한 자구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1. “습지”란 담수(淡水: 민물), 기수(汽水: 바닷물과 민물이 섞여 염분이 적은 물) 또는 염수(鹽水: 바닷물)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서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를 말한다.
 2. “내륙습지”란 육지 또는 섬에 있는 호수, 못, 늪, 하천 또는 하구(河口) 등의 지역을 말한다.

4. 개정안에 대한 관계 부처 의견

1) 환경부 의견

개정안에서 신설되는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사항과 관련하여 환경부 소관 기존 법률 및 정책과 중복 등 우려가 있고, 특히 기타효과적인보전조치지역의 제도화와 관련해서는 정부 내 논의 등을 이유로 수용곤란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i) 정의규정 중 산림환경, 산림생태계, 산림생물다양성, 산림보호구역, 산림생물자원, 현지의보전원, 기타효과적인지역기반보전조치 등 용어 정의,

ii) 산림환경보호기본계획 및 산림환경보호지역계획의 수립, 특별산림보호종 보전대책 수립, 산림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iii) 생태계 보전활동과 관련된 산림생태계의 연결성 조사, 현지의보전원의 조성·지정, 산림생물다양성 관련 연구·기술개발 등,

iv) 기타효과적인보전조치와 관련된 기타효과적인지역기반보전조치 실행 지역의 지정, 기타보전조치지역 관리계획 수립·시행, 기타보전조치지역의 산림생물다양성 증진 및 모니터링,

v) 보호구역 내 지역주민에 대한 「수도법」, 「하수도법」, 「가축분뇨법」에 따른 상·하수도시설 등 설치경비의 지원근거 등

2) 국가유산청 의견

산림생물다양성보호구역의 지정, 주민지원사업, 특별산림보호종의 지정, 기타효과적인지역기반보전조치 실행 지역의 지정 등에 대해 국가유산청 소관 법률에 근거하여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V. 조문별 검토¹⁸⁾

1. 법률 제명의 변경 및 목적

개정안은 법의 제명을 현행 「산림보호법」에 “환경”이라는 단어를 추가하여 「산림환경보호법」으로 변경하고, 법의 목적을 산림의 다양한 생태계, 산림경관 등을 비롯한 산림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산림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산림보호법」 vs 개정안 】

현 행	개 정 안
「산림보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산림병해충을 예찰(豫察)·방제(防除)하며 산불을 예방·진화하고 산사태를 예방·복구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림환경보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의 다양한 생태계, 산림경관 등을 비롯한 산림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산림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8) 개정안은 「산림보호법」을 토대로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에 관한 사항은 「산림재난방지법안」(정회용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211, 2024.6.7.)으로 분리·이관하고, 생물다양성에 관한 사항은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부터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존 규정에 대한 검토는 생략함.

「산림환경보호법」으로 법의 제명을 변경하고 있는 것은 현행 「산림보호법」상 산림재해에 관한 사항이 「산림재난방지법안」으로 분리·이관되고, 산림에 대한 정책기조가 기존의 인위적 훼손 방지에서 산림생태계 및 산림경관 등을 포함한 산림분야 생물다양성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로 전환됨으로써 산림환경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기 위한 측면에서 볼 때,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또한, 목적 규정은 법의 제명 변경에 맞추어 산림보호구역 관리, 산림병해충 예찰(豫察)·방제(防除), 산불 예방·진화, 산사태 예방·복구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대신 산림환경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확대에 기여하는 내용을 목적 규정에 추가할 필요가 있어 보임.

2. 정의 규정

개정안은 “산림환경”, “산림생태계”, “산림생물다양성”, “산림생물자원”, “특별산림보호종”, “보호수”, “현지외보전원”, “기타효과적인지역기반보전조치” 등을 각각 새로이 정의하는 한편, 현행 「산림보호법」의 개별 규정을 통해 정의되는 “보호수” 및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의 정의를 이관·통합하려는 것임(안 제2조).

【 「산림보호법」 vs 개정안 】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u><신설></u>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환경”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생물자원, 무생물자원, 산림 휴양 및 경관 자원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산림생태계를 말한다.
<u><신설></u>	2. “산림생태계”란 산림에서 생물과 환경의 유기적 상호작용에 의하여 형성되어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태계의 한 유형을 말한다.
<u><신설></u>	3. “산림생물다양성”이란 산림생태계와 이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종

현행	개정안
<u><신설></u> <u><신설></u> <u>6의2.</u> (생략) <u>6의3.</u> (생략) <u>6의4.</u> (생략) <u>6의5.</u> (생략)	<u>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로서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나무를 말한다.</u> <u>9. “현지외보전원”이란 산림생물자원을 그 산림 서식지 외에서 보전하기 위하여 조성한 것을 말한다.</u> <u>10. “기타효과적인지역기반보전조치”란 보호지역이 아닌 곳에서 생태계의 기능, 생태계서비스 및 생물다양성의 현지 내 보전을 달성하고, 문화적, 정신적, 사회·경제적 및 그 밖에 지역에 관련된 가치를 실현하는 조치를 말한다.</u> <u>11.</u> (현행 제6호의2와 같음) <u>12. “나무의사”란 수목진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56조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u> <u>13. “수목치료기술자”란 나무의사의 진단·처방에 따라 예방과 치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56조제2항에 따라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u> <u>14. “나무병원”이란 수목진료 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제59조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u>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임.

첫째, 개정안은 “산림환경”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가목을 인용하여 “생물자원, 무생물자원, 산림 휴양 및 경관 자원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산림생태계”로 표현을 반복하여 정의하고 있으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개정입법의 취지가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산림환경에 대한 정의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현지 내 보전” 및 “현지 외 보전”이라는 용어는 개정안 일부 조문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서 사용되고 있으므로, 정의규정에서 그 뜻을 명확하게 통합·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특히 이 용어들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현지외보전”¹⁹⁾에 관한 정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고,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일반적 용어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수월하게 법문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음.

셋째, “기타효과적인지역기반보전조치”라는 용어 및 정의는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사용되는 OECM(Other Effective area based Conservation Measures)을 직역한 것으로 국내법상 법률용어로 사용하기에는 다소 어색한 표현임을 감안할 때, 대국민 이해도를 위하여

1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현지외보전”이란 농업생물자원을 그 자연서식지 외에서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괄호를 추가하여 원어를 병기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해당 용어의 정의 규정 중 “문화적, 정신적, 사회·경제적 및 그 밖에 지역에 관련된 가치를 실현하는 조치”는 다소 불분명하고 추상적인 표현으로 법률상 정의개념으로는 구체성이 부족해 보이는바, 순화하여 표현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외국어를 한글로 표기하고 원어를 병기한 입법례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²⁰⁾ 등이 있음.

20)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주소”란 인터넷에서 국제표준방식 또는 국가표준방식에 의하여 일정한 통신규약에 따라 특정 정보시스템을 식별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숫자·문자·부호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정보체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인터넷 프로토콜(protocol) 주소: 인터넷에서 컴퓨터 및 정보통신설비가 인식하도록 만들어진 것

나. 도메인(domain)이름: 인터넷에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사람이 기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

3. 책무, 적용범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정안은 국가 및 지자체에 대하여 산림환경보호의 책무를 부여하고(안 제4조), 산림이 아닌 토지나 나무에 대하여도 산림보호구역, 기타효과적인지역기반보전조치가 시행되는 지역, 보호수 및 수목진료에 관한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도록 하며(안 제5조), 산림환경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6조).

【 「산림보호법」 vs 개정안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환경보호의 책무를 지며, 지속가능한 산림의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추구하고 산림을 건강하게 보전·관리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산림환경 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산림환경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산림이 아닌 토지나 나무에 대하여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u>산림보호구역, 보호수, 산림병해충 및 수목진료</u> 에 관한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	제5조(적용범위) 산림이 아닌 토지나 나무에 대하여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u>산림보호구역, 기타효과적인지역기반보전조치가</u> 시행되는 지역, <u>보호수 및 수목진료</u> 에 관한

현행	개정안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u>산림보호</u> 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u>산림환경</u> <u>보호</u> 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안 제4조는 이 법의 목적인 산림환경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분명하게 명시함으로써 이 법의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선언적 규정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임.

다만, 개정안은 국민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산림환경 보호를 위한 시책에 협조할 의무를 규정하면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산림환경보호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책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국민의 책무사항과 호응하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책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 법의 입법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도록 안 제4조제2항 중 “산림환경 보호”를 “산림환경보호”로, 같은 조 제1항 중 “산림”을 “산림환경”으로 각각 수정이 필요해 보임.

안 제5조는 현행법에 “기타효과적인지역기반보전조치가 실행되는 지역”을 포함하는 한편, “산림병해충”을 삭제하고 있는데,

이는 도시숲, 수목원 등도 산림생물다양성의 현지 내 보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기타 효과적인지역기반보전조치가 실행되는 지역”을 이 법의 적용범위에 포함하고, “산림병해충”에 관한 규정들이 「산림재난방지법안」으로 분리·이관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임.

또한, 개정안의 제명에 부합하도록 안 제6조 중 “산림보호”를 “산림환경보호”로 표현하고 있는바,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4. 산림환경보호기본계획의 수립 등

개정안은 산림보호 및 산림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5년마다 산림환경보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5년마다 산림환경보호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8조 및 제9조 신설).

【 「산림보호법」 vs 개정안 】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8조(산림환경보호기본계획의 수립) ① <u>산림청장은 산림을 건강하게 보호하고 산림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림에 대한 산림환경보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u> ② <u>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u> ③ <u>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u> 1. <u>산림환경보호에 관한 기본방향 및 보호·관리 목표설정에 관한 사항</u> 2. <u>산림환경보호를 위한 주요 추진</u>

현행	개정안
	<u>과제 및 사업에 관한 사항</u> 3. <u>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산림생물 다양성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u> 4. <u>자연기반해법을 통한 산림생물다양성 회복에 관한 사항</u> 5. <u>기타효과적인지역기반보전조치가 실행되는 지역에 관한 사항</u> 6. <u>산림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u> 7. <u>산림환경보호를 위한 조사·연구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u> 8. <u>그 밖에 산림환경의 효과적인 보호·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u> ④ <u>산림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 ⑤ <u>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u> ⑥ <u>산림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u>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산림환경보호지역계획의 수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림환경보호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지역계획, 시·군·구지역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은 지역계획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역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는 현행 「산림보호법」에 따라 수립·시행되고 있는 장기계획 및 연도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에서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대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과 현행법 제10조의3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계획 간

연계성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법의 제명 및 입법목적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되고, 산림청도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음.

개정안을 수용할 경우 산림생물다양성 등 산림환경보호를 위한 계획의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수립 및 시행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첫째, 개정안은 산림청장이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대하여 제출 및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대한 제출 및 보고를 통해 해당 계획이 충실하게 수립 및 이행되는지 점검·확인이 가능하고, 특히 산림생물다양성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이행을 확보할 수 있게 됨으로써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라 국제사회의 권고사항의 이행과 산림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책의 체계적·통일적 추진을 통해 입법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따라서 안 제8조에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이 적절해 보임.

이에 더하여 안 제8조 제목은 조문의 내용 중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산림환경보호기본계획의 수립”을 “산림환경보호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둘째, 안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9조에 따른 지역계획은 내용상 서로 연계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임.

법제실무상 지역계획은 기본계획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수립 또는 변경 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주체에게 이를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지역계획의 시행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규정하는 방식이 적절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안 제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조문을 신설하는 방식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

셋째, 안 제8조제5항 및 제6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각각 달리 하고 지칭하고 있어 일관성 및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법 시행상의 혼란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안 제5항은 산림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기본계획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반면, 안 제6항은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시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 제5항 및 제6항은 서로 호응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특히 시·도지사는 안 제6항에서 처음 사용되는 표현인데, 이 용어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중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를 약칭하는 것인바, 약칭하고자 하는 문구가 처음 나오는 조문에서는 구체적으로 권한과 사무의 책임 주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구체적인 권한과 사무의 책임 주체를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광역 또는 기초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명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안 제5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6항 중 “시·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음.

넷째, 안 제9조제1항 중 “지역계획”과 제2항 중 “시·도지역계획, 시·군·구지역계획”이 서로 연계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용어들의 관계를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따라 “시·도지역계획” 및 “시·

군·구지역계획”으로 용어를 각각 달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나, 이 용어들은 안 제9조제2항에서만 사용되고 있고 그 행정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표현되고 있어, “지역계획”을 “시·도지역계획 및 “시·군·구지역계획”으로 분리하여 표현해야 할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임.

따라서 개정안은 법문 표현의 통일성 측면에서 “시·도지역계획” 및 “시·군·구지역계획”을 “지역계획”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다섯째, 그 밖에 체계자구 정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안 제8조제3항 제4호 중 “자연기반해법”이라는 용어는 일상용어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뜻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제5호 중 “기타효과적인지역기반보전조치가 실행되는 지역”은 안 제38에서 “기타보전조치지역”으로 약칭되고 있는바, 약칭은 약칭하고자 하는 문구가 처음 나오는 조문에서 사용하는 것이므로, 이를 “기타효과적인지역기반보전조치가 실행되는 지역(이하 “기타보전조치지역”이라 한다)”로 수정하는 한편,

안 제8조의 “기본계획” 및 안 제9조의 “지역계획”이라는 약칭은 해당 조에서만 사용되고 있으므로, 안 제8조제1항 및 안 제9조제1항 중 “이하”를 각각 “이하 이 조에서”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5. 산림생태계의 연결성 조사 및 산림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개정안은 산림청장이 산림 내 물질의 순환 및 이동이 자연스러운 상태, 단절 및 훼손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산림생태계의 연결성을 조사하고, 산림생태계, 산림생물다양성 및 산림생물자원 정보통합 데이터베이스와 산림환경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11조 및 제12조 신설).

【 「산림보호법」 vs 개정안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조(산림생태계의 연결성 조사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 내 물질의 순환 및 생물의 이동이 자연스러운 상태, 단절·훼손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산림생태계의 연결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산림생태계의 연결성이 단절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림생태계 연결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산림생태계의 연결성 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2조(산림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환경의 효과적인 관리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산림생태계, 산림생물다양성 및 산림생물자원 정보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전산화한 산림환경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산림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필요한 경우 산림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산림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전문기관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최근 국제사회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고 2050년까지 생태계의 온전성·연결성·회복력을 유지·증진·복원하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고, 특히 산림은 육상 동물·식물의 80% 이상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중요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산림생태계의

연결성, 지속성, 회복 가능성을 유지·증진·복원하기 위한 기초조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산림생태계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산림생태계의 단절 및 훼손 여부 등에 관한 기초조사 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산림청은 매년 예산사업으로 산림생물다양성과 관련된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 모니터링, 산림의 건강·활력도 조사, 산림습원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수집된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자료의 통합관리 및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함.

이에 개정안은 산림생태계의 연결성 조사 및 다양한 산림생물다양성 관련 정보를 분석·활용할 수 있는 산림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단절된 산림생태계의 발굴 및 복원과 생태계 유지를 위한 관리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수집 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첫째, 안 제12조제2항은 산림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에 대해 산림환경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요구와 자료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자료 제출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필요한 자료의 범위와 자료 제출의 기간·방법·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자료 제출의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새로운 호를 신설하여 명시하되, 자료 제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위임하는 방식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또한, 자료요청 대상 기관의 경우 법체계상 정합성 측면에서 안 제8조제5항에 따른 자료요청 대상기관에 맞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는 표현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겠음.

둘째, 안 제12조제3항은 산림환경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탁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를 규정하지 아니하는 등 보완이 필요함.

개정안은 산림환경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수행함으로써 행정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되나, 수탁자에 대한 공무원의 의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수탁자가 해당 업무수행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범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가 불가능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안 제12조제3항에 따라 산림환경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해당 기관의 수탁업무 수행자에 대해서는 별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해 보임.

셋째, 기타 경미한 자구 수정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림생태계 연결성 조사”라는 용어는 그 뜻이 정의되고 있지 않으므로 “산림생태계에 관한 연결성 조사”로 풀어쓰는 것이 적절해 보이고, 안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안 제8조 및 제15조 등 개정안 전반에서 사용되고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수정이 필요해 보임.

6. 산림보호구역 토지의 매수·교환, 수원함양보호구역 매각·교환

개정안은 산림습원을 산림보호구역의 토지에 우선하여 매수·교환의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원함양보호구역 매각·교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안 제20조).

【 「산림보호법」 vs 개정안 】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산림보호구역의 토지의 매수·교환) ① <u>국가나</u>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소유자와 협의하거나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산림보호구역의 토지(입목·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구역 인근의 토지를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는 다른 산림보호구역의 토지에 우선하여 매수·교환의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1. ~ 2. (생략) <u><신설></u>	제20조(산림보호구역의 토지의 매수·교환) ① <u>국가 또는</u>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소유자와 협의하거나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산림보호구역의 토지(입목·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구역 인근의 토지를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는 다른 산림보호구역의 토지에 우선하여 매수·교환의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u>산림습원</u>

현행	개정안
3. (생략) <u><신설></u> 제12조의2(수원함양보호구역 토지의 매각·교환 등)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은 소관 국유림(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제외한다)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재산을 같은 법에 따라 매각·교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정권자와 미리 협의하고, 그 협의 결과를 매각·교환하려는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④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은 소관 국유림(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제외한다)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재산을 같은 법에 따라 매각·교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정권자와 미리 협의하고, 그 협의 결과를 매각·교환하려는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u><삭제></u>

현행법 제12조는 산림보호구역의 토지의 매수·교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우선 매수·교환의 대상으로 꾀자왈 및 풍혈지를 열거하고 있고, 제12조의2는 수원함양보호구역 토지의 매각·교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산림청(국립수목원)은 공·사유림을 대상으로 산림습원 조사(발굴 및 기초조사, 2006~2014년), 산림습원 정밀조사 및 보전등급 평가(2015~2019년), 산림습원 모니터링 및 가치평가(2020~2024년)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 결과,

① 산림습원 3,357개소(6,370ha)를 발굴하고 이 중 1,264개소에 대하여 기초조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91개소, 692ha), 산림습원 보전등급 평가²¹⁾ 산정 456개소(A등급:28개소, B등급:222개소, C등급:169개소, D등급:37개소), ② 우량 산림습원에 대한 모니터링²²⁾ (2023년까지 247개소 이행 완료), ③ 자연친화적 습원 보전·복원을 위한 산림습원 생태계 구조 및 기능정보의 구축, ④ DMZ 일대 신규 산림습원 및 멸종위기식물 자생지 발굴²³⁾ 등 실적이 있다고 설명함.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습원의 경제적 가치²⁴⁾는 8,211억원으로, 이는 환경부의 내륙습지 8,105억원, 해양수산부의 연안습지 7,485억원에 비해 높은 수준임.

이처럼 산림습원은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증진 및 산림생태계 유지

21) 평가항목: 식생 및 경관, 물질순환 및 수리수문, 인문·사회경관, 교란정도

22) 모니터링은 식생, 식물상 및 위협요인 등에 대한 분석 작업으로, 특정생물상(지의류) 조사 통한 산림습원 건전성 지표를 발굴하는 것으로, 우량 산림습원 모니터링은 2023년까지 247개소에 대해 1차년도 수행 완료됨.

23) DMZ 일대 A등급 16개소(서부 7, 중부, 9), 멸종위기식물(선제비꽃) 신규 자생지 발굴

24) 평가항목: 식생 구성, 종다양성, 수질, 인문사회경관 수준, 인위적 교란 정도

측면에서 보전가치가 상당히 높게 평가되고 있으나, 산림습원의 상당 부분이 사유림²⁵⁾에 분포하여 개발위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습원을 다른 산림보호구역의 토지에 우선하여 매수·교환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게 규정하여 산림습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입법필요성은 이해되고, 산림청도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첫째, 개정안은 “산림습원”이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지 않아 그 뜻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습원”이라는 용어의 적절성 및 같은 분야를 규정하는 「습지보전법」과의 관계에서 검토가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산림청은 산림습원을 “산림에 위치한 습지”로서 이를 내륙습지와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습지보전법」은 “습지”를 담수(민물), 기수(바닷물과 민물이 섞여 염분이 적은 물) 또는 염수(바닷물)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서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로 구분되고, 이 중 “내륙습지”는 육지 또는 섬에 있는 호수, 못, 늪,

25) 산림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산림습원은 국유림에 132개소, 74.7ha, 사유림에 323개소, 201.5ha로, 사유림의 산림습원은 국유림의 약 2.7배이고, 특히 생물다양성이 높은 A·B등급 산림습원(247개)의 75.3%(186개)는 사유림에 분포하고 있음.

하천 또는 하구(河口) 등의 지역임을 고려할 때, “산림습원”은 “내륙 습지”의 하위개념으로 볼 수 있음.

또한,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인 람사르협약(Ramsar Convention)에서도 습지는 크게 해안습지와 내륙습지 및 인공습지로 구분되는데, 이 중 내륙습지 종류에는 폭포, 담수호수, 이탄지, 소택지, 늪, 고산초지 등이 있음.²⁶⁾

따라서 “산림습원”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습지보전법」에서 규정된 “내륙습지”의 정의를 인용하되, 산림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화하는 것이 적절하고, 해당 용어 바로 다음에 괄호로 “(「습지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내륙습지로서 산림에 위치한 습지, 호수, 이탄지 등을 말한다)”로 규정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이에 더하여 법제실무상 법률에 사용되는 용어는 동일 분야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일관성이 있도록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산림습원”을 “산림습지”로 수정이 필요해 보임.

둘째, 「습지보전법」과의 중복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아울러 습지 관련 유관부처인 환경부와 협업체계를 지향할 필요가 있어 보임.

앞서 언급하였듯이 산림청은 산림습원 실태조사를 통해 산림습원

26) 「람사르협약의 습지보전 및 복원·재생을 위한 습지유형 분류 체계」, 국립생태원

밭굴, 산림습원의 생태계 구조 및 정보 등을 수집·관리하고 있고, 이에 개정안은 산림습원을 산림보호구역의 토지에 우선하여 매수·교환할 수 있는 대상지에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습지보전법」상 습지조사(제4조)²⁷⁾, 습지지역의 지정(제8조)²⁸⁾ 등과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보임.

즉, 산림청은 산림습원을 ‘산림보호구역’으로, 환경부는 습지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각각 지정·관리하고 있는데, 이 경우 특정 지역을 산림습원 및 습지지역으로 중복하여 지정·관리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적절치 아니한 측면이 있어 보임.

구체적으로 2024년 기준 산림습원 및 내륙습지의 지정 현황을 살

-
- 27) 제4조(습지조사) ①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5년마다 습지의 생태계 현황 및 오염 현황과 습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지역의 토지 이용 실태 등 습지의 사회적·경제적 현황에 관한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습지의 보전·개선이나 「물새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습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외에 정밀조사를 별도로 할 수 있다.
- ③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습지의 상태에 뚜렷한 변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습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기초조사에 대한 보완조사를 할 수 있다.
- 28) 제8조(습지지역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습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주변지역을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자연 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2.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거나 나타나는 지역
 3. 특이한 경관적, 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 ② (생 략)
- ③ 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습지보호지역등을 지정할 때에는 시·도지사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습지보호지역등을 지정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펴보면, 전체 산림습원 444곳 중 25곳(5.6%)이 내륙습지(환경부)와 중복되고 있음.

【 2024년 산림습원 및 내륙습지 지정 현황 】

지역	산림습원 (산림청)	습지 (환경부)	습지와 중복된 산림습원
강원특별자치도	130	276	6
경기도	37	196	-
경상남도	34	326	3
경상북도	68	370	1
광주광역시	2	51	-
대구광역시	3	22	-
대전광역시	-	14	-
부산광역시	3	23	-
서울특별시	-	8	-
세종특별자치시	-	13	-
울산광역시	7	30	-
인천광역시	1	24	-
전라남도	55	473	4
전북특별자치도	30	318	1
제주특별자치시	-	127	10
충청남도	16	251	-
충청북도	29	182	-
합계	444	2,704	25

자료 : 산림청

따라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산림습원 및 습지지역 간 중복 지정·관리 해소 및 효과적 보전 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현행 「습지보전

법」상 습지지역의 조사 및 지정 등에 있어 산림습원이 포함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해 보임.

이에 더하여 “내륙습지” 관련 유관부처가 되는 산림청 및 환경부가 분절적으로 “습지”에 대한 실태조사, 보호지역의 지정·보전 및 관리 등을 하고 있어 중복적 예산집행에 따른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습지 보전 및 관리 체계의 연계를 통해 정보공유 및 활용, 습지 보전·복원 사업 추진 시 소요되는 고정비용 절감 등 협업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셋째, 안 제20조는 수원함양보호구역 매각·교환에 관한 사항과 산림보호구역의 토지의 매수·교환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논리상·체계상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또한, 해당 조 제목은 “산림보호구역의 토지의 매수·교환”이므로, 조 제목과 조문 내용이 맞지 않고 매수·교환에 관한 사항과 매각·교환에 관한 사항은 논리상 연결되지 않는 서로 다른 내용으로 판단됨.

법제실무상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여러 내용을 하나의 조항에 규정할 수는 있겠으나, 서로 연결되지 않는 내용을 한 조항에서 규정하는 방식은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유사 입법례로 「국유재산법」은 매각에 관한 사항 및 매수에 관한 사항을 각각 별도의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음.²⁹⁾

따라서 수원함양보호구역 매각·교환에 관한 사항과 산림보호구역의 토지의 매수·교환에 관한 사항은 서로 구별되는 내용이므로 별도 조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29) 매각에 관한 사항은 법 제48조에서, 매수에 관한 사항은 법 제53조에서 규정함.

7. 주민지원사업

개정안은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림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에 대하여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 등을 위한 주민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21조 신설).

【 「산림보호법」 vs 개정안 】

현행	개정안
<신설>	제21조(주민지원사업) ①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제1항의 산림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 등을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주민이 주거용 주택(단독주택만 해당한다)의 증축·개축 등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법」,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상·하수도시설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의 설치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법상 ‘산림보호구역’이란 산림에서 생활환경, 자연경관, 수원함양, 재해방지, 산림유전자원 등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으로서,³⁰⁾ 해당 구역에서는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등 산림경영활동 등 행위제한이 되고 있음.³¹⁾

이러한 행위제한에 대한 산림보호구역 내 지역주민은 생활상 불편을 겪고 있으나, 이러한 불편을 해소 또는 저감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보호지역의 경우를 살펴보면, 백두대간보호지역³²⁾ 또는 자연공원³³⁾으로 지정 시 해당 지역주민의 불

30) 「산림보호법」 제7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 ①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특별히 산림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생활환경보호구역: 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2. 경관보호구역: 명승지·유적지·관광지·공원·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철도·해안의 주변으로서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3.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4. 재해방지보호구역: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해일·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種)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다만,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구역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31) 「산림보호법」 제9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산림보호구역(「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받은 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입목(立木)·죽(竹)의 벌채
2. 임산물의 굴취(掘取)·채취
- 2의2. 입목·죽 또는 임산물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
3. 가축의 방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편을 저감할 수 있도록 주민지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이 해당 법률에 규정되어 있음.

【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산림청) 및 자연공원 주민지원사업(환경부) 비교 】

구분	지원내용	지원대상자	사업 년도	2024년도 예산액
백두 대간 주민 지원	·단기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표고, 밤, 호두, 대추 등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시설조성: 송이 산 가꾸기, 관상식물 생산시설 등 ·임산물 저장·건조·가공·관수·하우스 시설 지원	백두대간보호지역 및 보호지역이 포함된 읍·면·동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한 주민, 마을공동체, 생산자 단체	2005년 부터 계속	41억원(국비) (국비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자연 공원 주민 지원	·생활환경 개선사업: 환경기초시설, 주민 편의시설, 마을공동시설 정비·개선 등 ·지역협력 커뮤니티 운영: 자원봉사	국립공원 구역 내 거주민	2008년 부터 계속	50억원 이상

32)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주민지원사업) ①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호지역(보호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축산업 관련 시설 설치 및 유기영농 지원 등 소득증대사업
2. 수도시설의 설치 지원 등 복지 증진사업
3. 자연환경 보전·이용 시설의 설치사업
4. 백두대간의 복원·복구 사업 또는 백두대간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 지원
5. 백두대간의 생태계·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伐採)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감소분 지원
6. 그 밖에 주민의 생활 편익, 소득 증대 또는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

33) 「자연공원법」 제73조의2(주민지원사업) ① 공원관리청은 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 등을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공원관리청은 지역주민(공원자연환경지구 및 공원마을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정한다)이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거용 주택(단독주택만 해당한다)의 신축·증축·개축 등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상·하수도시설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의 설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분	지원내용	지원대상자	사업 년도	2024년도 예산액
	운영,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협치위원회 및 국립공원 시민 대학 운영 ·특화사업: 국립공원 명품마을 조성 및 운영, 존치마을 개선사업			

자료 : 산림청

이에 개정안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산림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복리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되고, 산림청도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첫째, 다른 법률에 따른 보호지역, 예를 들면 백두대간, 자연공원 등과 중첩되고 있는 산림보호구역의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주민지원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중복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중복 지원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해 보임.

산림청에 따르면, 2024년 9월말 기준 백두대간보호지역과 중첩되는 산림보호구역 면적은 49,150ha이며, 자연공원과 중첩되는 산림보호구역 면적은 34,162ha인 것으로 파악됨.

이렇듯 중첩되는 산림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따른 주민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둘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가유산청은 현행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0조³⁴⁾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관리·활용과 관련한 사업과 거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중복지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따라서 개정안에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지원사업이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자연유산법」 등에 따른 주민지원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지원사업 중복 지원의 기준 및 예외 처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규정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둘째, 안 제21조제2항은 주민지원사업 지원의 대상이 되는 시설을 열거하면서 지원대상자를 “지역주민”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이 경우

34) 「자연유산법」 제50조(주민지원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한 지역사업
2.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의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주민의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있음.

즉, 안 제21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의 대상자가 되는 지역주민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지 않으므로 어느 범위까지가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예측하기 어렵게 하고 있음.

따라서 ‘누가’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지역주민이 되는지를 예측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2항의 지역주민 바로 다음에 괄호를 두어 그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유사 입법례로 「자연공원법」³⁵⁾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5) 「자연공원법」 제73조의2(주민지원사업) ② 공원관리청은 지역주민(공원자연환경지구 및 공원마을 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정한다)이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거용 주택(단독주택만 해당한다)의 신축·증축·개축 등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상·하수도시설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의 설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8. 특별산림보호종 지정 및 관리

개정안은 현행 「산림보호법」 상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이라는 용어를 “특별산림보호종”으로 변경하고, 5년마다 특별산림보호종을 재지정하며, 산림청장에 대하여 보전대책 수립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안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신설).

【 「산림보호법」 vs 개정안 】

현행	개정안
<신설>	제25조(특별산림보호종의 지정) ① <u>산림청장은 산림생물자원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특별산림보호종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다시 정할 수 있다.</u>
	② <u>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u>
	③ <u>특별산림보호종의 선정기준·종류·지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u>
<신설>	제26조(특별산림보호종 보전대책 수립 등) ① <u>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산림보호종의 보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현행	개정안
	② 산림청장은 특별산림보호종의 서식지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종의 증식·복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특별산림보호종에 대한 보전대책의 시행과 특별산림보호종의 증식·복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특별산림보호종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의 점용자·사용자·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점용자등”이라 한다)에게 해당 토지의 적절한 이용방법 등에 관한 권고를 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의 점용자등에게 권고사항의 준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의2(특별산림보호대상종의 지정·관리)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기후변화, 산림재해, 인위적 산림훼손 등에 특히 취약하거나 산림생태계 안정 및 경제적·문화적·학술적으로 가치가 높	제27조(특별산림보호종의 관리) <삭제>

현행	개정안
아 우선적인 보호가 필요한 산림 자원에 대하여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이하 “보호종”이라 한다)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종을 이 법에 따른 보호종으로 지정·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종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중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구역에 대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태숲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종의 보존·관리·증식·이용·품종개발 및 보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보호종의 종류·지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①----- -----<u>특별산림보호종</u>----- ----- ----- -----<u>산림생물다양성보호구역 또는 생태숲</u>----- ----- ----- -----.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③ -----<u>특별산림보호종</u>----- ----- ----- ----- ----- -----. <삭 제>

현행	개정안
제18조의3(보호종의 굴취·채취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된 보호종을 벌채·굴취·채취·손상 또는 말라 죽게 하거나 그 자생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특별산림보호종의 굴취·채취 금지 등) ① ----- <u>특별산림보호종</u> -----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굴취·채취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관계 법령에 따라 <u>보호종</u> 의 굴취·채취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 ----- ----- ----- ----- <u>특별산림보호종</u>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u>보호종</u> 의 지속적인 생장·번식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 ----- <u>특별산림보호종</u> ----- ----- ----- -----
③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u>보호종</u> 이 굴취·채취되어 그 자생지가 훼손된 경우에는 이를 복원 또는 복구할 수 있다.	③ ----- ----- ----- <u>특별산림보호종</u> ----- ----- ----- -----.
④ 제2항에 따른 <u>보호종</u> 의 굴취·채취 허가 및 제3항에 따른 복원	④ ----- <u>특별산림보호종</u> ----- -----

현 행	개 정 안
또는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

현행 「산림보호법」은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의 지정·관리 및 보호종의 굴취·채취 금지 및 자생지 훼손행위 금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산림보호대상종 지정 이후 재검토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분포 및 개체 수 변화 등 보전 현황에 대한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전에서도 굴취·채취를 금지하는 소극적인 조치로 국한되는 실정인바, 보전대책 수립을 통해 적극적으로 보전 정책을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개정안은 5년마다 현황조사를 통해 특별산림보호종의 지정 및 지정 해제를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해 보전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특별산림보호종의 체계적인 보전 및 보전 현황에 대한 평가를 통해 효과성 검증, 효과적인 종 보전을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로 이해되고, 산림청도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음.

다만, 안 제13조제1항제5호에서는 산림생물다양성보호구역 지정 시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구역의 경우에는 같

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안 제25조 및 제26조에 단서 신설을 통해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종으로 지정된 종에 대하여 특별산림보호종으로 지정·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는 방식이 적절해 보임.

9. 산림생태탐방의 육성 및 생태숲의 지정 등

개정안은 산림청장이 산림보호구역 중 산림생물다양성이 뛰어난 지역에서 산림생태탐방 및 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산림생태탐방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자·지역주민 또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안 제24조 신설),

산림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산림청장으로부터 생태숲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타당성 검토를 거쳐 생태숲 지정을 하고, 지정된 생태숲에 연구·교육·탐방·체험 등을 위한 시설(이하 “산림생태원”)의 설치 및 산림생태계의 복원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안 제29조 신설).

【 「산림보호법」 vs 개정안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4조(산림생태탐방의 육성 등) ① 산림청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중 산림생물다양성이 뛰어난 지역에서 산림생태탐방 및 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산림생태탐방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산림생태탐방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자, 지역주민 또는 민간단체에 대하

현행	개정안
제18조(생태숲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생태계의 안정과 산림생물의 다양성을 유지·증진하고 연구·교육·탐방·체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산림을 생태숲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태숲으로 지정받으려는 산림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생태숲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산림의 입지 여건, 면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그 산림을 생태숲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생태숲 또는 그 주변 토지에 제1항의 연구·교육·탐방·체험 등을 위한 시설(이하 "산림생태원"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훼손된 산림생태계를 복원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u>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 <u>③ 산림생태탐방 육성에 필요한 지원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29조(생태숲의 지정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수 있다. ⑤ 생태숲 지정·해제, 지정지역의 선정기준 및 산림생태원의 시설규모, 시설설치 범위 등 생태숲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안 제24조는 산림보호구역 내에서 운영 중인 산림생태탐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림보호구역의 보전 및 활용 가치 증진을 도모하는 모델로서 산림생태탐방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되고, 안 제29조는 현행 「산림보호법」 제18조의 위치를 이동한 것으로 조문의 내용은 현행과 같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첫째, 안 제29조제4항은 현행법 제18조제4항과 동일한 규정인데, 이는 2019년 중앙-지방간 기능조정에 따라 지방이양사무 이관에 관한 사항을 미반영하고 형해화된 것이므로, 현실에 맞게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상 생태숲으로 지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산림청장에게 생태숲 지정을 신청하면 산림청장은 신청사항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생태숲을 지정하는 절차로 진행되는데, 산림청

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에 총 50개소(3,995ha)의 산림이 지역 생태숲으로 지정·관리되고 있음.

그런데 산림청장의 지방자치단체의 생태숲 조성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³⁶⁾에 포함되어 2020년부터 국고 지원이 중단되었는 바, 안 제29조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내용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생태숲이나 그 주변 토지에 연구·교육·탐방·체험 등을 위한 시설(이하 “산림생태원”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둘째, 안 제24조는 안 제13조 및 제17조와 법체계상 정합성을 충족하고 있는지와 중복되지는 않는지, 안 제29조와 중복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안 제24조는 산림청장이 산림보호구역에서 산림생태탐방 및 교육의 실시, 산림생태탐방 육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지역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안 제13조는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주체를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안 제17조 제5항은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산림생물다양성보호구역에서 교

3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범위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육·탐방 및 안내 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안 제24조, 안 제13조 및 제17조는 체계적 정합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유사한 취지의 교육·탐방에 관한 사항을 중복 규정하고 있음.

또한, 안 제29조는 산림청장의 생태숲 지정 및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24조와 제29조는 유사한 측면이 있고, 생태숲 조성사업은 지방사무로 이양³⁷⁾된 점 등을 반영할 때, 안 제24조를 삭제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셋째, 안 제24조제1항에 단서 신설을 통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사전 협의를 규정하는 방식이 적절해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³⁸⁾에 따라 2011년부터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교육, 생태관광자원 조사·발굴 및 시설 설치 지원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중복성 해소를 위하여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산림청도 이에 대하여 동의하고 있음.

37) 앞서 언급하였듯이 2019년 중앙-지방간 기능조정에 따라 지역 생태숲 조성사업은 지방이양사무로 이관되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보조금 제외사업에 포함됨.

38)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생태관광의 육성) ① 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역(이하 “생태관광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태관광지역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0. 보호수 현황조사 등

개정안은 보호수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과 현황 파악, 보호수 점유토지의 매수·교환, 보호수의 질병·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이하 “보호수안전관리사업)의 실시, 보호수안전관리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안 제36조 신설, 안 제30조 및 제31조).

【 「산림보호법」 vs 개정안 】

현행	개정안
제13조(보호수의 지정·고시) ①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역사적·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이하 “보호수”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30조(보호수의 지정·고시) <삭 제>
②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수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지정 대상 나무의 소유자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① ----- --보호수-----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보호수의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 대상 나무의 소유	② ----- -----

현행	개정안
자나 지정 대상 나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 제1항제4호----- -----. ③ ~ ⑤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제13조의2(보호수의 관리 및 이전 등) ① (생략)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호수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나무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보호수의 질병 및 훼손 여부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보호수의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보호수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수하거나 그 토지를 다른	제31조(보호수의 관리 및 이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나무의사등 -----. <삭 제> <삭 제> <삭 제>

현행	개정안
<u>토지와 교환하는 방법으로 보호수를 보호·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u> <u><신설></u>	제36조(보호수 현황조사 등) ① 산림청장은 보호수가 현재 있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관리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보호수의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보호수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수하거나 그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하는 방법으로 보호수를 보호·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0조 규정을 준용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의 보전을 위하여 상시적인 질병·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이하 “보호수안전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현행	개정안
	1. 보호수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2. 보호수의 병해충 피해 등 예방 및 치료행위 3. 보호수 주변 지역 환경정비 및 재해예방 4. 보호수 및 그 주변지역의 재해 발생에 대응한 신속한 조사 및 응급조치 5. 그 밖에 보호수안전관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른 보호수안전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보호수안전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산림보호법」 제13조(보호수의 지정·고시), 제13조의2(보호수의 관리 및 이전 등) 및 제13조의4(보호수의 지정해제)는 보호수의 지정·지정해제·관리, 정기적인 점검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노목, 거목, 희귀목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보호수’로 지정·관리하고 있음.

산림청에 따르면, 2023년말 기준 전국 시·도에 13,870그루(전남 4,1

61, 경북 1,951, 충남 1,816, 충북 1,208 등) 및 산림청 소관에 22그루가 보호수로 지정·관리되고 있음.

산림청에 따르면, 현행법상 보호수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데 필요한 관리사업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보호수 관리 정도는 지자체장인 시·도지사³⁹⁾의 관심 여부 및 지자체 재정 여건 등에 따라 관리 수준에 차이가 상당하고, 법률의 집행과정에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당 규정이 형해화할 가능성이 있고,

2022년도부터 매년 약 3,000그루씩 보호수의 생육현황 파악 등을 위하여 연간 15억원의 예산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설명함.

이에 개정안은 지자체별 보호수 관리 수준의 편차를 최소화하고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호수안전관리사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보호수 안전관리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보호수안전관리센터 지정을 통해 보호수 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의 필요성은 동의할 수 있음.

다만, 안 제36조와 관련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첫째, 보호수 현황조사 및 자료요청에 관한 사항, 보호수 점유토지

39) 「산림보호법」 제13조의2(보호수의 관리 및 이전 등) ③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보호수의 질병 및 훼손 여부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의 매수·교환에 관한 사항, 보호수안전관리사업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서로 다른 내용이므로 3개의 조로 분리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안 제1항 및 제2항은 보호수 현황조사 및 조사에 필요한 자료 요청에 관한 사항을, 제3항은 보호수 매수·교환에 관한 사항을, 제4항 및 제5항은 보호수 안전관리사업의 범위 및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중 보호수 현황조사는 산림청장에 관한 사항이나, 보호수 안전관리사업은 시·도지사에게 관한 사항이고, 보호수 점유토지의 매수·교환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주체가 되므로, 이를 각각 분리하여 따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 대하여 자료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관련 기관 및 단체”는 그 범위가 포괄적이고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호수 관련 기관 및 단체”로 수정이 필요해 보임.

셋째, 자료 제출의 기간·방법·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료 제출의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으로 위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넷째, 산림청장의 보호수안전관리센터의 지정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으나, ① 보호수안전관리사업의 보호수안전관리센터에 대한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② 보호수안전관리센터의 지정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③ 보호수안전관리센터의 지정 취소 및 지정 취소 사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임.

개정안은 민간의 전문성 및 기술을 활용하여 보호수안전관리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되나,

① 보호수안전관리센터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보호수안전관리사업의 위탁 근거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조에 새로운 항을 신설하여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고,

② 보호수안전관리센터의 지정 시, 보호수안전관리센터의 자격 및 지정 기준·절차·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근거를 보완하는 방식이 적절하며,

③ 보호수안전관리센터의 지정 취소 시, 보호수안전관리센터로 지정된 나무병원 등이 보호수안전관리사업의 수행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을 고려할 때, 지정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지정된 기관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여 부실하게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지정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 경우 지정 취소는 침익적 행정행위라는 점에서 중대한 법 위반 행위는 필요적 취소사유로, 그 밖의 위반행위는 임의적 취소사유로 각각 규정하고, 시정명령 등 비교적 가벼운 제재수단도 함께 규정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정 취소의 방법·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해 보임.

다섯째, 개정안은 보호수안전관리센터의 운영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보호수안전관리사업의 업무 위탁에 따라 보호수안전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민간기관 위탁 시 위탁업무의 질이 저하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업무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 규정을 둘 필요가 있겠으나,

개정안과 같이 특정 수탁자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그 운영 경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따라서 안 제5항 중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여섯째, “보호수안전관리사업”이라는 약칭은 안 제4항 및 제5항에서만 사용되고 있으므로, 제4항 중 “(이하 “보호수안전관리사업”이라 한다)”를 “(이하 이 조에서 “보호수안전관리사업”이라 한다)”로 수정이 필요함.

일곱째, 그 밖에 체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호수 관리에 필요한 보호수 현황조사, 보호수안전관리사업, 보호수안전관리센터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한 규정임을 고려할 때, 안 제36조의 위치는 안 제31조 다음에 두는 것이 논리적으로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됨.

11.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개정안은 산림청장이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등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산림생물의 현지 내 보전 및 현지 외 보전에 필요한 생태숲과 수목원·정원의 조성, 산림생물다양성 보호 및 증식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37조 신설).

【 「산림보호법」 vs 개정안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7조(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등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산림의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현지 내 및 현지 외 보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생태숲과 수목원·정원의 조성 사업 2. 산림생물다양성의 조사 및 관리 사업 3. 산림생물다양성의 보호 및 증식 사업 4. 산림생물다양성의 연구 및 개발

현행	개정안
	<u>사업</u> 5. 그 밖에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사업</u>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u>정한다.</u>

이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산림생물다양성에 관한 사항을 분리·이관하여 이 법에서 체계적·통합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산림생물다양성 보전과 연계되는 산림복원⁴⁰⁾에 관한 규정인 제42조의2(산림복원의 기본원칙)부터 제42조의11(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 등)까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잔존하고 있어, 법체계상 정합성이 부족해 보임.⁴¹⁾

4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산림복원"이란 자연적·인위적으로 훼손된 산림의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이 원래의 상태에 가깝게 유지·증진될 수 있도록 그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41)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42조의2(산림복원의 기본원칙), 제42조의3(산림복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2조의4(산림복원 기본계획 등의 심의), 제42조의5(산림복원 대상지의 실태조사), 제42조의6(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 제42조의7(산림복원사업의 계획·시행 등), 제42조의8(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제42조의9(산림복원의 재료 등), 제42조의10(산림복원 전문 인력의 양성), 제42조의11(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 등)에서는 지속가능한 산림의 이용 및 보전을 추구하기 위하여 산림복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과 같이 산림생물다양성 보전과 연계되는 “산림복원”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할 경우, 산림생태계 및 산림생물다양성 등의 보전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법률에 통합하여 체계화하려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유사한 내용을 동일 법률에 통합하여 규정하는 방식이 관련 제도를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산림청은 산림복원이 산림조성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산림복원에 관한 사항들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잔존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하지만, 「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산림청고시 제2021-109호)에 따르면, “산림복원사업”이란 자연적·인위적으로 훼손된 산림의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이 원래의 상태에 가깝게 유지·증진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사업으로 정의된 점에 비추어 산림복원의 궁극적 목적은 산림환경보호에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산림복원에 관한 규정들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해 보임.

12. 기타효과적인지역기반보전조치 실행 지역의 지정 등

개정안은 산림청이 기타효과적인지역기반보전조치가 실행되는 지역(이하 “기타보전조치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보전조치지역의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산림생물다양성 증진사업과 산림생물다양성의 현지 내 보전 효과의 모니터링 등을 규정하고 있음(안 제38조 및 제40조까지 신설).

【 「산림보호법」 vs 개정안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8조(기타효과적인지역기반보전조치 실행 지역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기타효과적인지역기반보전조치가 실행되는 지역(이하 “기타보전조치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공익용산지 중 다음 각목의 지역 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나. 사찰림(寺刹林)의 산지 다. 「산지관리법」 제9조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

현행	개정안
<신설>	<u>발제한구역의 산지</u>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 바. 그 밖에 공익용산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2. 제1호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산림생물다양성의 현지 내 보전에 기여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기타보전조치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기타보전조치지역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산림청장은 기타보전조치지역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타보전조치지역 관리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타보전조치지역 보전·관리 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기타보전조치지역의 보전·복원·관리에 필요한 사항 3. 기타보전조치지역의 조사·연구·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보전조치지역의 지속가능한

현행	개정안
	<u>이용에 필요한 사항</u> 5. 그 밖에 기타보전조치지역의 보전 <u>· 관리에 필요한 사항</u> ② 산림청장은 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기타보전조치지역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산림청장은 관리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관리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현행	개정안
<신설>	⑥ 시·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관리계획에 따라 5년마다 관할 기타보전조치지역에 대한 관리계획(이하 이 조에서 “지역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⑦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관리계획과 지역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0조(기타보전조치지역의 산림생물다양성 증진 및 모니터링) ①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타보전조치지역 내에서 산림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보호·관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호·관리 사업의 내용·시행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생물다양성 보호·관리 사업 등 기타보전조치지역 내 산림생물다양성 현지 내 보전 효과 등에

현행	개정안
	대하여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는 산림환경보호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모니터링 기준·방법 및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사회는 2021년 생물다양성협약 제15차 당사국총회 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⁴²⁾를 채택하고, 2022년 12월 기준 2030년까지 생물다양성에 있어 중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육상 및 해양의 30%를 보호지역 또는 기타효과적인지역기반보전조치⁴³⁾를 통해 보호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함.

우리나라는 보호지역을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및 준보전산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중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공익용 산지에는 자연휴양림의 산지, 사찰림의 산지,

42) 산림청에 따르면, 생물다양성협약의 2011~2020년 목표(아이치타겟)의 이행기간 종료에 따라 2050년까지 목표 4개, 2030년까지 23개 세부실천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파악됨.

43) 산림청에 따르면, 보호지역 이외에 생태계 서비스, 문화적·영적 가치와 함께 생물다양성에 대한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현지 내 보전을 제공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관리되는 지리적으로 한정된 공간을 말함(2017, 세계보호지역위원회).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의 산지, 자연공원의 산지,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위제한을 받게 됨.

그런데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는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등 산림경영활동이 제한되는 등 행위제한과 재산권 제약이 수반되므로, 산림청은 보호지역을 확대하는 데 현실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다른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활동 등의 행위가 제한되는 공익용 산지를 기타보전조치가 실행되는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호구역의 추가 지정 없이도 국제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기타보전조치지역의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산림생물다양성 현지 내 보전 성과를 달성하려는 취지로 이해되고, 산림청도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임.

첫째, 개정안은 기타보전조치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기타보전조치지역 지정의 해제·변경, 해제·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임.

둘째, 안 제39조제5항은 자료요청 대상기관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고 있으나, 법체계상 정합성 측면에

서 안 제8조제5항에 따른 자료요청 대상기관과 일치하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셋째, 경미한 자구 정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안 제40조제5항 중 “산림환경보호기본계획”을 “기본계획”으로 수정이 필요하고, 안 제38조제1항제1호 중 “각목의”를 “각 목의”로 띄어쓰기가 필요함.

13. 연구·기술개발 및 산림환경모니터링센터의 지정 등

개정안은 산림환경보호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의 추진, 산림환경모니터링센터(이하 “모니터링센터”)의 지정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안 제50조 및 제51조 신설).

【 「산림보호법」 vs 개정안 】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50조(연구·기술개발 등) ① 산림청은 산림환경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 관련 연구 및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산림환경 보전 및 증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2. 산림생물다양성의 현황 및 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및 평가 3.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복원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4. 산림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분석 5. 기타보전조치지역의 산림생물다양성 증진 효과 조사 및 연구 6. 외래식물의 관리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현행	개정안
<신설>	7. 그 밖에 산림의 보전·이용에 필요한 연구 및 기술개발 ② 산림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의 지원에 따라 연구·개발된 기술 및 성과는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51조(산림환경모니터링센터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환경보호 및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증진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산림환경모니터링센터(이하 “모니터링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모니터링센터는 기후변화 취약 산림생태계의 변화내용 관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③ 산림청장은 모니터링센터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모니터링센터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은 산림환경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 관련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림 환경보호 및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증진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모니터링센터를 지정하고, 모니터링센터에서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업 범위를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개정안에 따를 경우 국립산림과학원 및 국립수목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림생태계서비스 및 보전·복원 연구, 산림생물종 조사 및 정보화 연구 등을 대학·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추진하게 됨으로써 기후위기로 인하여 그 중요성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생물다양성 분야의 연구 및 기술개발이 활성화되고, 산림생물다양성 영향·변화 추적 등 장기·전문적인 조사가 요구되는 산림생태계의 모니터링을 전담할 모니터링센터의 지정을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관리를 위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의 생산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입법필요성은 인정됨.

참고로 개정안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31조⁴⁴⁾를 차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44)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연구 및 기술개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등의 보전·이용 관련 연구 및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갯벌등의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2. 갯벌등의 지속적 생산력 증진을 위한 외래해양생물의 구제(驅除)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3. 갯벌생태계의 복원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4. 국제교류를 통한 기술개발
5. 그 밖에 갯벌등의 보전·이용에 필요한 연구 및 기술개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지원에 따라 연구·개발된 기술 및 성과는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첫째, 안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은 조문 내용이 논리적으로 서로 연결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임.

안 제1항은 “산림청장”에 대하여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을 수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안 제2항은 산림청장이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제1항 및 제2항은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안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을 통합하여 제1항으로 하고, 산림청장이 같은 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 호 외의 부분을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각 호에서는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들을 명시하는 방식이 적절함.

둘째, 안 제50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다른 조문에 근거를 두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지,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의 범주에 속하는 것인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해 보임.

안 제2호의 “산림생물다양성의 현황 및 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조

록 하여야 한다.

사 및 평가”는 안 제3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산림생물다양성의 조사 및 관리”와 중복되는 내용일 뿐 아니라, 연구 및 기술개발의 특성보다는 그간의 집행현황 등을 조사 및 평가를 통해 다음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반영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실태조사”의 성격에 부합한 측면이 있으므로, 안 제2호를 삭제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제3호의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복원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은 안 제3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산림생물다양성의 연구 및 개발”과 중복되는 내용임을 감안하여,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을 일괄하여 규정하는 방식이 입법경제적 측면에서 적절해 보이는바, 안 제3호를 삭제할 필요가 있음.

셋째,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은 상당한 기간 일정 규모의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정량적·정성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수행자의 자격요건 및 기준 등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는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임.

넷째, 모니터링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가 충분히 구체적인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안 제51조제2항은 모니터링센터의 사업 범위를 “기후변화 취약 산림생태계의 변화내용 관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하위법령으로 위임하면서, 제3항에서는 모니터링센터에 대한 재정적 지

원을 규정하고 있는바, 어떠한 사업이 정책적·재정적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예측하기 어렵고, 가급적 행정입법을 통해 무분별하게 입법사항을 규정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2항에 각 호를 신설하여 모니터링센터의 사업 범위를 충분히 열거하는 방식이 적절해 보임.

이에 더하여 안 제1항 및 제2항은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데, 제1항은 모니터링센터의 지정 목적으로 “산림환경보호 및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증진 시책의 추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2항은 모니터링센터 사업의 범위에 산림환경보호 시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모니터링센터의 지정 목적을 실질적으로 포괄하면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섯째, 개정안은 모니터링센터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모니터링센터 지정의 취소, 지정 취소 사유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임.

모니터링센터로 지정된 기관이 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을 가정할 때, 지정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지정된 기관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여 부실하게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정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다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지정 취소는 침익적 행정행위라는 점에서 중대한 법 위반행위는 필요적 취소사유로, 그 밖의 위반행위는 임의적 취소사유로 규정하는 방안과 시정명령 등 비교적 가벼운 제재 수단도 함께 규정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정 취소의 방법·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해 보임.

참고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⁴⁵⁾에서는 도시숲지원센터가 지정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법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정 취소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여섯째, 그 밖에 자구 정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안 제50조제1항제4호 중 “산림생태계서비스”는 이 조문에만 나오는 용어이므로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해당 용어 바로 다음에 괄호로써 용어를 정의할 필요가 있고,

안 제6호의 “외래식물”은 이 법의 취지가 산림생물다양성 보전·관리·증대에 있음을 반영하여 “외래생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며,

45)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등)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숲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상 없이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안 제51조제3항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표현이 포함되도록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임.

14. 국제협력

개정안은 산림환경보호와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관련한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산림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산업인력 및 기술의 교류, 관련 국제기구 활동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52조 신설).

【 「산림보호법」 vs 개정안 】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52조(국제협력) 산림청장은 산림환경 보호와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관련한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산림 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산업인력 · 기술의 교류, 관련 국제기구 활동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2022년 생물다양성협약 제15차 당사국총회 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실천목표 20(기술이전 및 과학기술 협력을 통해 역량을 강화) 이행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지원 수단으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취지로 이해되고, 산림청도 이에 대해 공감하고 있음.

다만, 개정안의 조문 내용은 「산림기본법」 제31조⁴⁶⁾에 따라 국

46) 「산림기본법」 제31조(국제산림협력 관련 시책의 수립 등) ① 국가는 국제적 환경문제의 해결과

제적 환경문제와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위한 국제산림협력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과 유사한 취지이므로, 산림환경보호
및 산림생물다양성 분야에 차별화된 내용으로 보완이 필요해 보임.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위하여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국제산림협력을 촉진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사회의 산림 관련 정책·제도 및 현황을 조사·연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조사·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5. 청문

개정안은 나무의사 자격의 취소 또는 자격정지의 경우, 나무의사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또는 시정명령의 경우, 나무병원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경우 해당 처분에 앞서 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68조).

【 「산림보호법」 vs 개정안 】

현 행	개 정 안
제48조의3(청문)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8조(청문) ----- ----- -----.
1. 제21조의6제6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의 취소 또는 자격정지	1. 제56조제6항----- ----- -----
2. 제21조의7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또는 시정명령	2. 제57조제2항----- ----- -----
3. 제21조의10제1항에 따른 나무병원의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3. 제60조제1항----- ----- -----

개정안은 인용조문의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조항의 번호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임.

다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안 제36조에 따른 보호수안전관리센터, 안 제51조에 따른 산림환경모니터링센터에 대한 지정 취소를 처분하려는 경우, 이러한 처분은 침익적 행정행위라는 점을 고려하여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16. 부칙

부 칙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를 삭제한다. ②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3제1항제4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산림환경보호법」 제72조제1항의 죄 제1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의 건강·활력도 조사, 산림보호구역, 생태숲, 산림생태원, 보호수, 숲사랑지도원, 나무병원에 관한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안 부칙 제16조는 다른 법률의 개정을 통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를 삭제하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제1항제4호다목의 법 제명 및 인용조항을 각각 정비하고 있고, 안 부칙 제17조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여 산림의 건강·활력도 조사, 산림보호구역, 생태숲, 산림생태원, 보호수, 숲사랑지도원, 나무병원에 관한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안 부칙 제17조는 이 법을 개정하는 데 따라 산림의 건강·활력도

조사, 산림보호구역, 산림생태원, 보호수, 숲사랑지도원, 나무병원에 관한 규정과 관련해서는 다른 법령을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효과를 거두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법제실무상 “다른 법령과의 관계”로는 관련 법률의 외형상 변화가 없어 어떤 조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어 적용되는 것인지 명백히 알기 어려워 법률 이해에 불편을 가져올 수 있어 해석상 혼란 및 이해하는 데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다른 법률의 개정” 규정을 통해 최대한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보충적으로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⁴⁷⁾

“다른 법률의 개정”의 경우에도 관련 법률의 자구 또는 인용조문 정리와 같이 경미한 사항의 개정만이 해당하게 되며, 법률 내용의 실체적인 변동이 생기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그런데 개정안과 관련되어 다른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를 살펴보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등 추가로 108개의 법률이 해당되나, 안 부칙 제16조는 이 법률들에 대한 개정사항을 누락하고 있음.

47) 「법제이론과 실제(2019)」, 국회 법제실, p.779.

【 다른 법률의 개정을 통해 정비가 필요한 대상 규정 】

	법률명	정비대상규정
1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1항제29호 제34조
2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15호
3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제9호
4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1호
5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제12호
6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5호
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2호
8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제2호
9	공공주택특별법	제18조제1항제20호 제35조제4항제12호 제40조의8제4항제20호
10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1호
1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제9호
1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8호
13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 연번 제201번
14	광업법	제43조제1항제8호
15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14호
1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2조제1항제13호 제80조제1항제7호
1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제1항제11호
18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8호
19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의2호 제16조제2항제1호
20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7조제1항제7호
2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64조제3항제1호 제65조제1항제3호

	법률명	정비대상규정
22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1호
2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3조제1항제17호
2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11호
25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2조제1항제4호
26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제14호
27	농어촌정비법	제106조제2항제15호
28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제18호
29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14호
30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제10호
31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9호
32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제14호
33	도로법	제29조제1항제10호
3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1항제7호
35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3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1항제30호
37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제18호
38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제18호
39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5조제1항제16호
40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제6호 제12조제3항 제13조제4항 제18조제1항제5호
41	문학진흥법	제23조제1항제8호
4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1호 제30조제1항제15호
43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호·제3호 제16조제1항제16호
4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0조제1항제6호
45	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제2호

	법률명	정비대상규정
46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제1항 제4호 다목
47	사방사업법	제7조의3제1항 제10조제2항
48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2호아목
4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7항제6호 제36조제1항 제47조제7항
5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9호
5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제5호 제45조의4제1항제5호
52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14)
5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제52호
54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0호
55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2제1항제6호
56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제11호
57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0호
58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3호
59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8호
60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4호
61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제2항
62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9조제1항제9호
6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제1항제18호
6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1항제3호
6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제9호
66	어촌·어항법	제8조제14호
67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16조제1항제12호
6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1항제2호
69	연안관리법	제26조제1항제5호
70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1호

	법률명	정비대상규정
71	온천법	제10조의2제1항제13호
72	유통산업발전법	제30조제1항제2호
73	자연공원법	제21조제1항제13호
74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의2제2항제16호 제32조
75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제2항제6호 제15조제3항제3호 제16조의2제2항제6호
76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3호
77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제16호
7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제1항제6호
7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8조제1항제20호 제283조제2항
80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1항제1호다목 제102조제1항
81	주택법	제19조제1항제12호· 제13호
8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제9호
83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제20호 제19조제2항·제3항
84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6조제1항제3호
85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제2호
8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9조제1항
87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14호
88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3조제1항제6호 제52조제12항제10조
89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제10조
90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별표 연번 제113번
91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2호
92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3항

	법률명	정비대상규정
9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1호
94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제23조제2항제2호
95	하수도법	제17조제1항제10호
96	하천법	제32조제1항제14호
97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제7호
9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1호
99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3제12호
100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8조제1항제11호
101	항만공사법	제23조제1항제9호
102	항만법	제98조제1항제11호
103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2호
104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10호
105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1항제2호
106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5호
10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제22호
10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6조의4제1항제15호

문 의 처

02)6788-5423

참 고 자 료

참고 1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주요내용

※ 주요내용 요약(환경부 비공식번역본) / 원문: CBD 누리집(cbd.int) 참조(산림청 제공)

□ 2050 비전(2050 Vision) : 자연과 조화로운 삶(Living in harmony with nature)

□ 2030 미션(2030 Mission)

- 인류와 지구를 위해 긴급한 조치를 취하여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고, 자연을 회복의 길로 되돌려 놓음

□ 2050 목표(2050 Goals)

○ 목표 A

- 모든 생태계의 온전성·연결성·복원력을 유지·강화 또는 복원하고, 면적을 크게 확대
- 인간이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진 생물종 멸종을 중단, 모든 종의 멸종률 및 위협을 1/10로 감소, 토착종의 개체수를 건강하고 복원가능한 수준으로 증대
- 야생종 및 가축종의 개체군 내 유전다양성이 유지되어 적응력을 보호

○ 목표 B

- 생물다양성이 지속가능하게 이용·관리되며, 생태계 기능 및 서비스 등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혜택이 가치화되고, 유지·강화

○ 목표 C

- 유전자원, 유전자원과 관련된 디지털서열정보 및 전통지식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금전적·비금전적 이익이 토착민과 지역사회 등에게 공정·공평하게 공유되고 대폭 증가되며, 국제적으로 합의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체계에 따라 관련 전통지식이 적절히 보호됨

○ 목표 D

-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인 자원, 역량개발, 과학기술협력, 기술에 대한 접근 및 이전이 모든 당사국(특히, 개도국, 최빈국, 군서도서개도국, 시장경제전환국)에게 보장되고, 매년 7,000억 달러의 생물다양성 격차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재정흐름을 GBF에

□ 2030 실천목표(2030 Targets)

< 생물다양성 위협 저감 실천목표 >

○ 실천목표 1

- 모든 지역이 생물다양성이 통합된 공간계획 및 토지 및 해양의 이용변화 등 효과적인 관리절차를 통해 하에 있도록 보장, 생물다양성의 중요도가 높은 지역의 손실을 완전히 없앴(토착민과 지역사회(IPLC)의 권리를 존중)

○ 실천목표 2

- 최소 30%의 훼손된 육지, 담수, 해양 및 연안 생태계가 효과적으로 복원되어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기능, 서비스, 생태적 온전성과 연결성을 강화시킴

○ 실천목표 3

- 육지, 담수, 해양 및 연안지역(특히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기능 및 서비스 측면에서 중요한 지역)의 최소 30%가 보호지역 및 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 조치(OECMs) 관리 체계를 통해 효과적으로 보전·관리됨(IPLC의 권리를 존중)

○ 실천목표 4

- 인간이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진 멸종을 중단시키고 멸종위기종 등을 보전·복원하며, 토착종·야생종·가축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복원하여 적응력을 유지하고, 현지 내 및 현지 외 보전 및 지속가능한 관리 규범, 효과적으로 관리되는 인간과 야생동물의 상호작용(충돌 최소화)을 통해 공존을 도모

○ 실천목표 5

- 야생종의 이용, 수확, 거래가 지속가능하고, 안전하고, 합법적이도록 하며, 남획 방지, 의도치 않은 종과 생태계에 대한 영향 최소화, 병원균 유출 위험을 감소시키고 생태계 접근법을 적용함(IPLC의 권리를 존중)

○ 실천목표 6

- 외래종의 유입경로를 확인·관리하고, 우선순위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을

막음으로써 침입외래종의 영향을 제거, 최소화, 감소시키거나 저감시키고, 침입외래종의 개체수를 제거 또는 조절하여 알려진 또는 잠재적인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최소 50% 낮춤(특히 섬과 같은 우선순위 지역에서)

○ 실천목표 7

- 보다 효율적인 영양순환 및 이용 등을 통해 환경에 유실되는 과다영양을 최소 절반으로 저감(식량안보와 생계를 고려), 과학 기반의 통합적 관리 등을 통해 살충제와 매우 유해한 화학물질로부터의 위험을 절반으로 감소, 플라스틱 오염의 방지 및 감소·제거를 위해 노력

○ 실천목표 8

- 자연기반해법 또는 생태계기반접근을 포함한 저감, 적응, 재해위험 감소행동을 통해 기후변화 및 해양산성화가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생물다양성의 회복력을 증진(동시에 기후행동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은 촉진)

< 지속가능한 이용 및 이익공유 관련 실천목표 >

○ 실천목표 9

- 사람들(특히, 취약한 상황에 처해있거나 생물다양성 의존도가 큰)에게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이익이 되도록 생물다양성 기반 활동, 제품, 서비스를 포함하여 야생종 관리 및 이용이 지속가능하도록 보장(IPLC의 관습적인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호·장려)

○ 실천목표 10

- 농생태적 및 기타 혁신적 접근법을 포함한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생물다양성에 친화적인 관습을 통해 농업, 양식업, 어업 및 임업이 이뤄지는 지역이 지속가능하게 관리되고, 이러한 생산체계의 회복력, 장기적 효율성 및 생산성과 식량안보에 기여

○ 실천목표 11

- 자연기반해법과 생태계기반접근법을 통해 대기, 물, 기후, 토양건강, 질병 위험의 조절, 자연재해로부터의 보호와 같은 생태계 기능 및 서비스를 포함한 자연의 인간에 대한 기여를 복원, 유지 및 강화

○ 실천목표 12

-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주류화함으로써 도시 및 인구 밀집 지역의 그린 및 블루 인프라의 면적과 품질, 접근성 및 이익을 증가시키고, 생물다양성이 통합된 도시계획을 보장하고, 토착 생물다양성과 생태적 연결성·온전성을 증진시키고, 인간 건강과 웰빙, 자연과의 연결을 개선하여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과 생태계 기능과 서비스 제공에 기여

○ 실천목표 13

- 유전자원의 이용, 유전자원에 관한 디지털서열정보 및 전통지식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정·공평한 공유의 보장을 위해 적용가능한 국제적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문서에 따라 유전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을 촉진하고, 이익공유의 상당한 증가를 촉진시키며,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인 법적·정책적·행정적 및 역량강화 조치를 취함

< 이행 및 주류화 관련 실천목표 >

○ 실천목표 14

- 모든 공공 및 민간의 활동, 재정 및 금융흐름을 프레임워크의 목표 및 실천목표에 점진적으로 동조화시키고, 정부의 전 부문에 걸쳐 정책, 규제, 계획 및 개발과정, 빈곤퇴치전략, 전략환경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국가 회계에 생물다양성과 그 다중 가치의 완전한 통합을 보장

○ 실천목표 15

- 생물다양성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증가시키며, 비즈니스 및 재정 분야 생물다양성 관련 위험의 감소, 지속가능한 생산 패턴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행정적·정책적 조치를 취하며, 특히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 금융기관이 다음의 조치를 취하도록 보장:
 - (a) 운영, 공급 및 가치 사슬, 포트폴리오에 따라 모든 대형 및 다국적 기업, 금융기관이 생물다양성에 대한 요구 및 위험, 의존도 및 영향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평가, 투명하게 공개
 - (b) 지속가능한 소비패턴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
 - (c) 해당되는 경우, 접근 및 이익공유 규정 및 조치 준수에 대해 보고

○ 실천목표 16

- 지원 정책, 입법 및 규제체계의 수립을 포함하여 교육, 정확한 정보제공 및 대안에 대한 접근 개선을 통해 사람들이 지속가능한 소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모든 사람들이 지구와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공평한 방식으로 전세계 소비 발자국을 줄이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절반으로 줄이며, 과소비와 폐기물 발생을 줄임

○ 실천목표 17

- 생물다양성협약 제8조(g)항에 규정된 생물안전조치와 협약 제19조에 규정된 생명공학의 취급 및 그 이익 분배를 위한 조치를 모든 국가에서 수립·강화 및 시행

○ 실천목표 18

- 가장 유해한 보조금부터 정당하고 공정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생물다양성에 유해한 인센티브·보조금을 2025년까지 규명하고, 제거하고, 단계적으로 폐지하거나 개혁하고(2030년까지 매년 5,000억 달러를 저감하면서),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긍정적인 인센티브는 증가시킴

○ 실천목표 19

-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실행계획의 이행을 위해, 협약 제20조에 따라 국내, 국제, 공공 및 민간 자원을 포함하여 효과적이고 시기적절하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아래의 방법을 포함한 방법으로, 모든 출처의 재정자원 수준을 실질적이고 점진적으로 증가시킴(2030년까지 매년 최소 2,000억 달러를 동원)

(a) 선진국 및 자발적으로 선진국 의무를 질 당사국으로부터 개발도상국들(특히, 최빈개도국, 군소도서개도국, 경제적 과도기에 있는 국가들)으로의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국제 재원흐름을 증대

(b) 국가의 필요, 우선순위 및 상황에 따라 국가 생물다양성 재정계획 또는 이와 유사한 조치의 준비 및 이행으로 국내 자원동원의 증대를 촉진

(c) 민간금융 활용, 혼합 금융 촉진, 신규 및 추가 자원동원 전략의 이행, 기금 및 기타 수단을 포함한 민간부문의 생물다양성 투자 장려

(d)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녹색 채권, 생물다양성 상쇄 및 증명서, 이익공유 메커니즘, 환경 및 사회 안전장치와 같은 혁신적인 계획을 촉진

(e) 생물다양성 및 기후위기를 대상으로 한 금융의 공동편익 및 시너지 최적화

(f) 토착민과 지역사회를 포함한 집단행동의 역할 강화, 지역사회 기반 천연 자원 관리 및 시민사회 협력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목표로 하는 연대를 포함한 지구 중심 행동과 비시장 기반 접근방식

(g) 자원제공 및 이용의 효과성,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 실천목표 20

- 효과적인 이행 요구(특히, 개도국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동 기술개발 및 공동 과학연구 프로그램을 육성하고, 프레임워크에 상응하는 연구 및 모니터링 역량을 강화하고, 남-남, 북-남, 삼각 협력을 통해 역량구축 및 개발, 기술 접근 및 이전을 강화하고 혁신 및 과학기술협력의 개발 및 접근을 촉진

○ 실천목표 21

- 효과적이고 공정한 거버넌스, 생물다양성의 통합적·참여적인 관리와 소통, 인식제고, 교육, 모니터링, 연구 및 지식관리 강화를 위해 의사결정자, 실무자 및 대중이 최상의 데이터, 정보 및 지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IPLC의 전통지식, 혁신, 관행, 기술은 국가 법률에 따라 보호)

○ 실천목표 22

- 토착민 문화와 토지, 영토, 자원, 전통지식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고, 여성 및 소녀, 어린이와 청소년, 장애인들의 완전한, 공평한, 포괄적·효과적인, 성인지적인 대표성과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하고, 토착민과 지역사회에 의한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정당성과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

○ 실천목표 23

- 생물다양성과 관련한 모든 수준의 행동, 참여, 정책 및 의사결정에서 토지 및 천연자원에 대한 동등한 권리와 접근 및 완전하고, 공평하고, 의미있고, 정보에 입각한 참여와 리더십을 인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여성 및 소녀가 협약의 세 가지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와 능력을 갖는 성인지적인 접근법을 통해 프레임워크 이행에서 양성평등을 보장

참고 2

산림보호구역 일반현황

□ 지정 목적

- 산림에서 생활환경·경관의 보호와 수원(水源) 함양, 재해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증진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1908년 산림법에 따라 산림보호를 위하여 '보안림'으로 지정한 이래, 1961년 제정된 산림법에서도 지정하여 현재 '산림보호구역'으로 변경·지정하고 있음

□ 산림보호구역 종류

산림보호구역(법 제7조)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 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 유지와 보건위생	• 명승지, 유적지, 관광지, 공원, 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 철도, 해안의 주변으로서 경관 보호	•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 - (제1종) 산업용수의 저수량 유지 - (제2종) 상류 수원 유역으로서 한해(旱害), 수해 영향 및 수목 생육 불량지역 - (제3종) 한강수계 등 국가 주요수계의 상수원 수질관리	•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해일, 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	•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種)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

□ 산림보호구역 지정 현황('23년말 기준)

(단위 : ha)

관서별	합계	생활환경	경관	수원함양				재해방지	산림유전자원
				소계	제1종	제2종	제3종		
산림청	342,586	3	2,567	168,792	14,895	4,510	149,387	829	170,395
지자체	139,685	10	15,227	115,949	75,464	8,234	32,251	2,195	6,304

자료 : 산림청

참고 3

특별산림보호대상종 지정 현황

번호	종 명	
	국 명	학 명
1	광릉골무꽃	<i>Scutellaria insignis</i> Nakai
2	금강초롱꽃	<i>Hanabusaya asiatica</i> (Nakai) Nakai
3	금새우난초	<i>Calanthe sieboldii</i> Decne. ex Regel
4	등대시호	<i>Bupleurum euphorbioides</i> Nakai
5	만삼	<i>Codonopsis pilosula</i> (Franch.) Nannf.
6	먹넉출	<i>Berchemia racemosa</i> var. <i>magna</i> Makino
7	모데미풀	<i>Megaleranthis saniculifolia</i> Ohwi
8	백양꽃	<i>Lycoris sanguinea</i> var. <i>koreana</i> (Nakai) T. Koyama
9	봉래꼬리풀	<i>Veronica kiusiana</i> var. <i>diamantiaca</i> (Nakai) T. Yamaz.
10	산마늘	<i>Allium microdictyon</i> Prokh.
11	삼지구엽초	<i>Epimedium koreanum</i> Nakai
12	새우난초	<i>Calanthe discolor</i> Lindl.
13	설앵초	<i>Primula modesta</i> var. <i>hannasanensis</i> T. Yamaz.
14	세잎승마	<i>Cimicifuga heracleifolia</i> var. <i>bifida</i> Nakai
15	어리병풍	<i>Parasenecio pseudotaimingasa</i> (Nakai) B.U. Oh
16	자란	<i>Bletilla striata</i> (Thunb.) Rchb.f.
17	참배암차즈기	<i>Salvia chanroenica</i> Thunb.
18	참작약	<i>Paeonia lactiflora</i> var. <i>trichocarpa</i> (Bunge) Stern
19	청사조	<i>Berchemia racemosa</i> Siebold & Zucc.
20	큰제비고깔	<i>Delphinium maackianum</i> Regel
21	가문비나무	<i>Picea jezoensis</i> (Siebold & Zucc.) Carrière
22	구상나무	<i>Abies koreana</i> E.H. Wilson
23	꼬리말발도리	<i>Deutzia paniculata</i> Nakai
24	너도밤나무	<i>Fagus engleriana</i> Seemen ex Diels
25	눈잣나무	<i>Pinus pumila</i> (Pall.) Regel
26	눈측백	<i>Thuja koraiensis</i> Nakai
27	눈향나무	<i>Juniperus chinensis</i> var. <i>sargentii</i> A. Henry
28	댕강나무	<i>Abelia mosanensis</i> I.C. Chung ex Nakai
29	두메닥나무	<i>Daphne pseudomezereum</i> A. Grayvar. <i>koreana</i> (Nakai) Hamaya
30	땃두릅나무	<i>Oplopanax elatus</i> (Nakai) Nakai
31	만리화	<i>Forsythia ovata</i> Nakai
32	만병초	<i>Rhododendron brachycarpum</i> D.Don ex G.Don
33	복사앵도나무	<i>Prunus choreiana</i> Nakai ex H.T. Im

번호	종 명	
	국 명	학 명
34	산개나리	<i>Forsythia saxatilis</i> (Nakai) Nakai
35	산닥나무	<i>Wikstroemia trichotoma</i> (Thunb.) Makino
36	설악눈주목	<i>Taxus caespitosa</i> Nakai
37	섬국수나무	<i>Physocarpus insularis</i> (Nakai) Nakai
38	섬댕강나무	<i>Abelia coreana</i> var. <i>insularis</i> (Nakai) W.T. Lee & W.K. Paik
39	왕벚나무	<i>Prunus yedoensis</i> Matsum.
40	왕자귀나무	<i>Albizia kalkora</i> (Roxb.) Prain
41	주목	<i>Taxus cuspidata</i> Siebold & Zucc.
42	줄댕강나무	<i>Abelia tyaihyoni</i> Nakai
43	채진목	<i>Amelanchier asiatica</i> (Siebold & Zucc.) Endl. ex Walp.
44	털조장나무	<i>Lindera sericea</i> (Siebold & Zucc.) Blume
45	갈색날긴뿌리버섯	<i>Oudemansiella brunneomarginata</i> L. Vass.
46	꽃방패버섯	<i>Albatrellus dispansus</i> (Lloyd) Canf. & Gilb.
47	노란달걀버섯	<i>Amanita hemibapha</i> subsp. <i>javanica</i> Corner & Bas
48	목질진흙버섯	<i>Phellinus linteus</i> (Berk. et Curt.) Teng
49	산호침버섯	<i>Hericium coralloides</i> (Scop.) Pers.
50	연기색만가닥버섯	<i>Lyophyllum fumosum</i> (Pers.) P. D. Orton
51	잎새버섯	<i>Grifola frondosa</i> (Dicks.) Gray
52	자흑색불로초	<i>Ganoderma neojaponicum</i> Imazeki
53	차가버섯	<i>Inonotus obliquus</i> (Ach. ex Pers.) Pilat

자료 : 산림청

참고 4

보호수 지정현황(2023년말 기준)

구 분	합계	느티나무	소나무	팽나무	은행나무	버드나무	회화나무	향나무	기타
계	13,870	7,238	1,786	1,332	767	579	361	236	1,571
시도계	13,848	7,238	1,773	1,332	767	579	361	235	1,563
서울	202	98	8	-	48	-	17	13	18
부산	229	14	148	34	3	-	8	-	22
대구	331	147	19	36	25	21	26	2	55
인천	116	58	11	6	21	-	6	6	8
광주	81	39	5	11	5	13	1	-	7
대전	122	88	12	2	6	9	2	1	2
울산	79	8	16	9	1	2	7	1	35
세종	75	46	1	2	9	10	-	3	4
경기	1,049	602	30	8	205	2	36	98	68
강원	705	201	174	2	40	-	5	9	274
충북	1,208	694	270	15	62	34	7	24	102
충남	1,816	1,181	154	82	99	111	23	25	141
전북	653	456	55	40	34	30	5	2	31
전남	4,161	2,127	522	786	78	195	28	10	415
경북	1,951	1,004	248	66	84	129	175	38	207
경남	912	475	68	135	46	23	14	3	148
제주	158	-	32	98	1	-	1		26
산림청 계	22	0	13	0	0	0	0	1	8
북부청	9	0	3	0	0	0	0	0	6
동부청	0	0	0	0	0	0	0	0	0
남부청	6	0	4	0	0	0	0	1	1
중부청	2	0	2	0	0	0	0	0	0
서부청	5	0	4	0	0	0	0	0	1

자료 : 산림청

참고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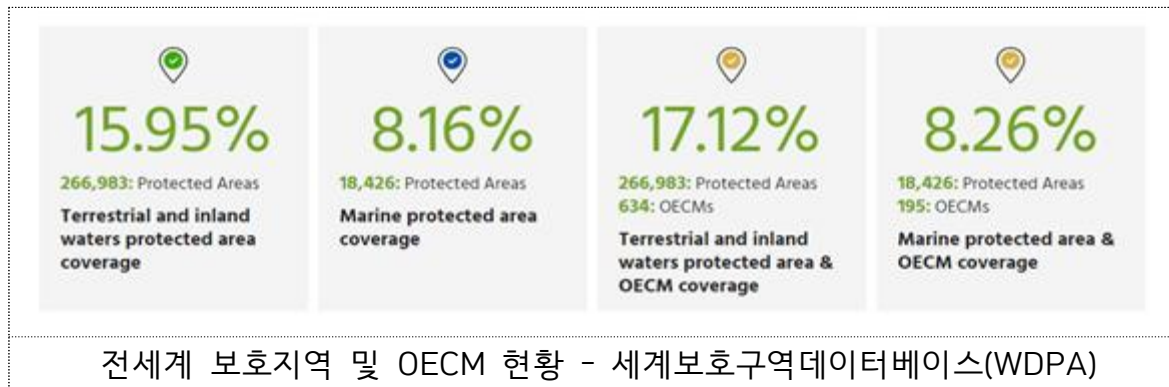
기타효과적인지역기반보전조치(OECM) 개요

□ (정의) 보호지역이 아닌 지리적으로 한정된 지역으로서, 관련 생태계 기능 및 서비스와 함께 생물다양성의 현지 내 보전의 장기적인 성과를 긍정적이며 지속적으로 달성하고 적용 가능한 경우에 문화적, 정신적, 사회·경제적, 기타 지역 관련 가치를 실현하는 방식으로 관찰되고 관리되는 지역(생물다양성협약, 2018)

□ (구성요소)

- ① 현재 보호지역으로 승인되지 않은 지역
- ② 지리적으로 한정되며, 관찰·관리되는 지역
- ③ 생물다양성의 현지 내 보전에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기여
- ④ 생태계 기능 및 서비스 그리고 문화적·정신적·사회경제적·기타 지역 관련 가치와 연관

□ (등록현황) 합계 : 829건 (육지 : 634건 / 해양 : 195건, 현 시점 기준)



□ (주요국 현황) 캐나다는 법정계획 수립지역, 군사지역, 수원함양지역, 석탄·석유·가스 채굴지역 등 213개 지역을 OECM으로 지정·관리('23.5, 유엔환경계획(UNEP)-세계보전모니터링센터(WCMC))

자료 : 산림청